

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구례군 정기종합감사 -

2022. 9.



전라남도
JeollaNamdo
[감 사 관 실]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구례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구례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19년 5월부터 '22년 5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조직·인사관리,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2. 6. 21.부터 6. 29.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현황

('22. 5월말 기준)

인 구	면 적	조 직
25,140명 (전남의 1.4%)	443.24km ² (전남의 3.6%)	○ 2실, 12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8읍면 ○ 행정구역 : 1읍 7면

※ 직속기관(2) :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 사 업 소(2) : 상하수도사업소,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

2.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 '22. 5월말 기준)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지도직
정원	573	1	538		34
현원	543	1	509		33
증감	△30		△29		△1

3.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 '22. 5월말 기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5월	
	본 예산	최종 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예산	증감률 ('19 대비)	예산	증감률 ('19 대비)	예산	증감률 ('20 대비)	예산	증감률 ('20 대비)	예산	증감률 ('21 대비)
계	2,867	3,467	3,028	5.6%	4,250	22.6%	3,139	3.7%	5,854	37.7%	3,300	5.1%
일반회계	2,798	3,357	2,957	5.7%	4,191	24.8%	3,089	4.5%	5,802	38.4%	3,258	5.5%
특별회계	69	110	71	2.9%	59	△46.4%	50	△29.6%	52	△11.9%	42	△16.0%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 총 48건의 위법·부당사항, 모범사례, 사전컨설팅을 확인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가+나+다+라)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건)												모범 사례 (다)	사전 컨설팅 (라)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A+B+C+D+E+F)	시 정							주의 (B)	개선 (C)	권고 (D)	통보 (E)			경고 (F)
					계 (A=a+b)	재정상 처분(건/백만원)				재정상의 시정 (b)								
						소계 (a)	회수	부과 추징	감액		기타							
48	12 (21명)	1 (2명)	11 (19명)	32	16 (2,609)	11 (2,609)	2 (43)	1 (5)	3 (1,986)	5 (575)	5	14	2	-	-	-	3	1

2. 주요 처분요구

①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총무과)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

1.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다른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기초하여 전체 근무성적평정서열을 결정하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평정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총무과)은 '20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20년 상반기에 3명, '20년 하반기에 2명 등 총 5명에 대하여 평정단위별 제출된 순서와 다르게 전체 근무성적평정서열을 부당하게 변경 처리

연번	평정 시기	평정 단위	대상자			근무성적평정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
			직렬	부서	이름	평정단위별 서열		전체 근무성적평정서열		
						순위	정당한 평정점수	순위	실제 평정점수	
1	2020년 상반기 (3명)	○○5급	녹지	○○면	○○○	10	51.7	12	50.7	미등재
2			농업	○○면	○○○	11	51.2	10	51.7	미등재
3			시설	○○○○과	○○○	12	50.7	11	51.2	미등재
4	2020년 하반기 (2명)	○○6급	시설	○○○○과	○○○	4	48.7	25	48.2	미등재
5			시설	○○○○과	○○○	5	48.2	24	48.7	미등재

※ 전체 근무성적평정서열 변경으로 인해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미발생

- 그로 인하여 근무성적평정상위 선순위와 후순위가 바뀌는 등 근무성적 평정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 초래

2. 근무성적평정결과 미공개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공무원이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확인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총무과)는 '20년 하반기부터 '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단위(부서별) 별 근무성적평정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미공개 중이고, 별도 공지 기간에 인사부서에 요청한 자에게만 결과를 공개 중
- 그로 인하여 본인의 평정단위(부서별) 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아는 경우가 근무성적평정 대상의 1.3%에서 2.6%에 불과하고, 이의신청 비율은 0%를 나타내는 등 평정결과의 공개로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령의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

구분	평정대상자 (명)	공개요청 및 공개자		이의신청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20년 하반기	507	13	2.6	-	0.0
2021년 상반기	528	9	1.7	-	0.0
2021년 하반기	525	7	1.3	-	0.0
2022년 상반기	538	13	2.4	-	0.0

3. 승진자에 대한 자격증 가산점 부당 부여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승진임용 시 이미 자격증 가산점이 반영된 자에게는 자격증 가산점을 미부여하도록 규정('22. 1. 1.시행)
- 그런데 위 군(총무과)은 '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22. 1월부터 자격증 가산점 규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승진 시 자격증 가산점이 반영된 4명에 대하여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
- 그로 인하여 부적정한 가산점 부여로 다른 직원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를 초래

☞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 공개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제도상 개선요구”
 ☞ 앞으로 자격증 가산점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②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기획예산실, 총무과)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징계요구부서의 21명에 대한 경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업무를 추진하였고,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64명에 대한 피의사건을 처리

1. 부당한 징계감경 및 징계부가금 미부과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절도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경우 해당 징계 외에 횡령·절도로 취득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등에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횡령·절도한 자에게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의결하되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 공유재산 횡령·절도 비위 : 최소 감봉이상 징계, 1배 이상 징계부가금 부과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실)은 '19. 00. 00. 광주지검○○지청으로부터 공유재산 횡령, 절도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지방○○6급 ○○○를 경징계 요구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절도한 비위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음
- 또한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라 '감봉'이상의 징계처분과 징계 역시 감경이 불가능한데도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팀장이 상훈감경이 가능하다 인사위원에게 잘못 진술하여 '견책'으로 감경되는 계기가 됨
- 그로 인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

2. 기소유예 결정자 징계의결요구 부당 처리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징계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기소유예 결정은 의무적으로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실)은 '19. 00. 00. ○○지검으로부터 지방○○7급 ○○○에 대한 ○○죄 기소유예 결정 처분을 통보 받았는데도 군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훈계' 처분
- 그로 인하여 군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결과를 초래

3.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절차 미이행

- 위 군(총무과)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징계요구부서(기획예산실)로부터 6급 이하 19명에 대한 경징계 요구에 대하여 징계업무를 추진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등에 징계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이 가법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 전에 직근 상급기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만 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권한있는 징계처분권자가 적법하게 징계 처분을 하였다면 심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총무과)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징계요구된 6급 이하 19명 모두의 징계의결 결과를 징계요구부서에 통보하면서 징계요구 부서의 심사청구 의사 확인 없이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징계처분
- 그로 인하여 비위행위 징계의결 결과에 대한 징계요구부서의 심사 권한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

 관련부서에 앞으로 징계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③ 임도시설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산림소득과)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산림경영과 유지·관리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약 32억원의 보조금으로 23건에 임도시설사업 추진

1. 입목부산물 처리비 설계 미반영

- 「산림자원법」 제9조 등에 임도시설사업 설계 시 노면 및 경사면에 있는 입목(뿌리 등 포함)은 전량 제거하고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산림소득과)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19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등 8건의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입목부산물 처리비를 계상하지 않아 입목부산물이 임도 사면에 폐기되도록 방치
 - 그 결과 임도 사면 등에 방치된 입목부산물이 집중호우·태풍·산불 등에 의한 2차 피해에 취약한 결과 초래(2차 피해 조사결과 해당 없음)

2. 임도시설 설치계획 미준수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에 임도의 설치는 5년 단위로 수립된 임도설치계획에 의하여 설치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산림소득과)은 5년 단위로 수립된 임도설치계획('16~'20)에 미포함된 '19년 ○○○○지구 작업임도 개설사업 등 3건(8억 800만원, 3.56km)의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하였고,
 - '19년부터 '22년까지 8건(20억 6,100만원)의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
- 그로 인하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임도 관련 2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비 625만원을 추가집행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 초래
- * '19년 ○○○○지구는 ○○재배로 노선변경, '20년 ○○○○지구는 산주요구로 노선변경

3. 임도시설사업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하자 담보책임 존속 기간 중에 중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산림소득과)은 '19. 7월부터 '21. 7월까지 '19년 ○○○○ 임도 구조개량 등 13건의 사업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하여 시설물 파손 등 발생 시 사후관리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우려 초래

☞ 입목부산물 처리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임도시설사업 추진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現 담당자 “**훈계요구**”

4 민원업무수당 및 장려수당 지급 부적정

- 위 군(재무과)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민원업무 담당자 85명에게 민원수당을 지급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및 위생·하수·쓰레기처리장 등 처리업무 종사자 65명에게 장려수당을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에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재무과)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민원창구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과 ○○○ 등 8명에게 적게는 41만원부터 많게는 130만원까지 총 524만원의 민원업무수당을 부당 지급
- 같은 규정 제14조 등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업무 종사자에게 장려수당 5만원을, 위생·하수·쓰레기처리장 및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 전담기관 근무자 중 전담 처리 공무원에게 장려수당 1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재무과)은 '19. 00월부터 '20. 00월까지 상하수도 시설관리 지원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장 ○○○에게 72만원을 부당 지급
 - 또한 '19. 5월부터 '22. 5월까지 위생·하수·쓰레기 등 업무를 전담처리하지 않는 ○○○○과 ○○○ 등 9명에게 적게는 75만원부터 많게는 450만원까지 총 2,482만원의 장려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예산낭비 초래

☞ 부당지급한 민원업무수당 524만원과 장려수당 2,554만원 등 총 3,078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관련부서에 민원업무수당 및 장려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도록 “주의요구”

5 당직수당(일·숙직비) 공금 유용

- 위 군(총무과)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일·숙직비를 1인당 6만원씩 3여년간 총 1억 9,824만원을 일·숙직자에게 지급
-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에 일·숙직비는 일정기간 단위(일주일, 10일 등)로 당직업무 담당부서에서 개산급(정액)으로 인출하여 당일 일·숙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한편 위 군(총무과)은 월 단위로 일·숙직비를 0~0백여만원을 지출하여 전용계좌에 관리하고 있다가 당직근무 당일 일·숙직자에게 지급
 - * 당직근무 담당자(○○○)가 당직수당을 월 1회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당직근무 보조자(○○○)이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당직자에게 지급
- 그런데 위 군(총무과)은 '20. 00월부터 '22. 00월까지 ○○직 ○○○이 총 0회에 걸쳐 000만원을 전용계좌에서 본인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 ○○ 등으로 사용하거나, 평균 1주일에 000~000여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 ○○직 ○○○이 총 0000만원을 유용하였는데도 당직수당(일·숙직비) 전용계좌에 대한 점검을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직 ○○○이 일·숙직비 0000만원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결과를 초래

- ☞ 공금을 유용한 공무원 1명 “징계요구”, 당직수당 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現 담당자 1명 “경징계요구”, 現 담당팀장 1명 “훈계요구”
- ☞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숙직비 전용계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⑥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 누락

- 위 군(경제활력과 등 4개 부서)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 수영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 ○○○ 등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건축물을 준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수영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활력과 등 4개 부서)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임대 목적으로 시설 투자한 '○○○○○ ○○○' 등 5건의 공유재산 총공사비 46억 5,049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억 2,277만원을 관할 세무서에 공제 또는 환급 미신청
- 그로 인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 가능한 4억 2,277만원의 부가가치세 미환급으로 지방재정 손실을 가져올 우려

☞ ○○○○ ○○○ 등 4개 부서, 5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4억 2,277만원을 관할 세무서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요구”

7 세입세출외현금 등 공금계좌 세입관리 부적정

- 위 군(친환경농정과 등 10개 부서)은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추가로 공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을 추진
-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 제81조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군에 귀속시키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재무과 등 7개 부서)은 '22. 6. 29. 감사일 현재 '11. 6. 23. ○○○이 예치한 보관금 5천원 등 반환기간 5년이 경과하여 세입에 편입하여야 할 보관금 137건 4,887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 중
-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 처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 등 4개 부서)은 '22. 6. 29. 감사일 현재 개설사유를 알 수 없거나 사업 완료로 세입처리 해야 할 현금 등 7건 78,602천원을 보통계좌에 방치 중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에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은 '22. 1월부터 '22. 6. 20.까지 ○○○○ ○○교육장 입장료 등 48만원을 징수하고도 세입처리를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수납금을 세입처리 하지 않아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

☞ 세입세출외현금 중 세입에 편입해야 할 4,887만원, 사업완료 후 보관중인 잔액 7,860만원, ○○○○ 생태교육장 입장료·체험료 48만원 등 총 1억 2,795만원을 세입조치하도록 "시정요구"

⑧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환경교통과)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을(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 추진

* 집단급식소(1일 평균 100명 이상), 휴게음식점(200㎡ 이상), 대규모점포(3,000㎡ 이상), 휴양콘도미니엄업, 농수산물도매·공판장, 종합유통센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등에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재활용하거나 폐기물 처리·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하고, 사업 개시일 1개월 이내 감량, 자가처리, 재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또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9조에 군수는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미신고 사업장의 적발 및 근절을 위해 수시점검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교통과)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학교 등 14개 사업장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고 수시점검도 미 실시 하는 등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소홀
 -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 폐기물을 자가처리 하거나 음식물 폐기물 처리·재활용업체 등에 위탁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미신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폐기물을 구례군에서 직접 처리
- 그로 인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적정하게 재활용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관리·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소홀히 한 前 및 現 담당자 2명 “**훈계요구**”

☞ 미신고한 14개 사업장에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를 받아 음식물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시정요구**”

9 용역 적격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재무과 등 3개 부서)은 용역 계약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계약업무 추진

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등에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 이상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
- 한편 위 군은 '19. 00. 00. ○○○ 소재 ○○ ○○○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방안 실시설계 용역 입찰 공고 시 적격심사 때 기술인력평가는 “문화재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으로 제한한다고 명시
 - 그런데 위 군(문화관광실)은 '19. 00월 적격심사 참가업체((주)○○○○○○○○)가 제출한 3건의 실적은 기술인력평가 제한사항에 미해당한데도 이를 인정하여 계약부서(재무과)에 적격심사 평가 대상 용역실적으로 제출하였고,
 - 계약부서(재무과)는 적격심사 서류 평가를 하면서 용역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용역수행능력(기술인력)에 만점을 부여하여 (주)○○○○○○○○를 낙찰자(적격심사결과 85.58점)로 결정하여 '19. 6. 17. 계약 체결(1억 2,058만원)
-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낙찰업체가 선정되어 차순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 이상 기술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
- 한편 위 군은 '21. 1. 26. ○○면 ○○○○○ 조성사업 용역 입찰 공고 시 적격심사 때 이행실적평가는 관광단지 실시설계 용역 등 설계용역으로 제한한다고 명시

- 그런데 위 군(문화관광실)은 '21. 00월 적격심사 참가업체(○○○○○(주))가 제출한 4건의 실적은 이행실적평가 제한사항에 미해당한데도 이를 인정하여 계약부서(재무과)에 적격심사 평가 대상 용역실적으로 제출하였고,
- 계약부서(재무과)는 적격심사 서류 평가를 하면서 용역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에 만점을 부여하여 ○○○○○(주)를 낙찰자(적격심사결과 96점)로 결정하여 '21. 00. 00. 계약 체결(1억 3,544만원)
- 또한 위 군은 '21. 00. 00. 지리산 ○○○○○ ○○자리사업 실시설계 용역 입찰 공고 시 적격심사 때 이행실적평가는 동물사육시설 실시설계 용역 등 설계용역으로 제한한다고 명시
- 그런데 위 군(환경교통과)은 '21. 00월 적격심사 참가업체((주)○○○○○사무소)가 제출한 2건의 실적은 이행실적평가 제한사항에 미해당한데도 이를 인정하여 계약부서(재무과)에 적격심사 평가 대상 용역실적으로 제출하였고,
- 계약부서(재무과)는 적격심사 서류 평가를 하면서 용역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용역수행능력(이행인력)에 9점을 부여하여 ○○○○○(주)를 낙찰자(적격심사결과 95.40점)로 결정하여 '21. 00. 00. 계약 체결(1억 7,242만원)
-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낙찰업체가 선정되어 차순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

- ☞ 적격심사 시 실적증명 업무를 소홀히하여 적격심사통과 대상이 아닌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前 및 現 담당자 5명 **"훈계요구"**
- ☞ 앞으로 관련부서에 용역 적격심사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10 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평생교육과)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공공성 등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1. 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부적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시장·군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후원금을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이상이면 시설장을 교체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평생교육과)은 ○○○○지역아동센터가 '21년 후원금을 ○○○ ○○ 등 용도 외로 사용하였는데도 '22. 00. 00. 과태료 300만원은 부과하지 않은 채 1차 위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개선명령만 조치
 - 그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사회복지시설의 질서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

2. 후원금 관리·감독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에 시장·군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으로부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제출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평생교육과)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아동센터 등 지역아동센터 총 6개소가 제출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서를 인터넷에 미공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에 계약은 「지방계약법」 및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평생교육과)은 '21. 00. 00. ○○○○지역아동센터가 후원금으로 ○○○○○○ 및 ○○○○ 설치 공사대금 790만원을 집행하면서 계약 미체결, 계약서 및 설계서 등 관련 서류 없이 견적서만 첨부하여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부적정 집행하였는데도 이를 방치

- 그로 인하여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

- ☞ 후원금 용도 위반 사용 건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 앞으로 후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는 인터넷에 공개하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지방계약법 등을 준용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1 사회보장급여 지급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등에 수급권자에게 미지급한 급여는 소급 지급하고, 이미 지급한 과잉분은 환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 종합민원실)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사회보장급여를 16명에게 688만원 과소 지급, 1명에게 7만원 과다 지급

(단위: 천원)

구분	사유	과소		과다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6	6,880	1	70
생계급여	신규 신청한 달부터 미지급	8	1,009		
	급여 산정 오류			1	70
주거급여	장기입원자 지급월 산정 오류	1	271		
장제급여	미신청으로 인한 미지급	7	5,600		

-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수급자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20년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22년에는 기한을 초과하여 수립
 - 그 결과 복지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지 못하여 수급자의 권리구제가 소홀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 될 우려를 초래

☞ 과소 지급한 16명에 대해 688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1명에게 대해 7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 수급자 관리 및 급여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2 구례군○○회 보조금 지원·관리 등 부적정

- 위 군(스포츠산업과)은 '19. 5월부터 '21년까지 ○○발전 및 군민의 ○○활동을 장려하고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 ○○회에 보조금으로 48억원을 지원하였고,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은 직접관리 중

1.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 보조금 지원 부적정

-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은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스포츠산업과)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 8,64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6,521만원을 수당으로 부당하게 지원

2.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 예산편성 부적정

-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등에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조례사항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실)은 '19년부터 '22. 5월까지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 지원 보조금은 법령에 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실무검토 없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편성
- 그 결과 법령에 교부할 수 없는 수당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적정하게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3.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부적정

- 「구례군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등에 실내체육관 등 체육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스포츠산업과)은 '21. 7월부터 12월까지 ○○○○○ 하계 축구 전지훈련 등 54건에 대한 사용료 5,204만 원을 부당하게 전액 면제하여 5,204만원의 지방재정 확보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 초래

4.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 「지방회계법」 제50조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스포츠산업과)은 '19. 5월부터 '21년까지 구례군○○회가 회계관직을 지정하지 않고 회계담당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48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 그 결과 회계관직을 지정받지 않은 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계사고 발생 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

- ☞ 군○○회 사무국장 수당을 부당하게 지원한 관련 담당자 2명 **"훈계요구"**
- ☞ 군○○회 사무국장 수당 집행잔액 1,260만원은 군 세입처리하고, 군○○회에 회계관직을 지정한 후 회계담당자에 대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시정요구"**
- ☞ 앞으로 사무국장 수당 부당 예산편성 및 체육시설 사용료 부당면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13 도로·하천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 사용 협의 없이 무단 훼손

- 위 군(건설과)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관내 도로 및 하천 정비공사 총 8건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 「도로법」 제29조, 「하천법」 제32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개별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등을 미리 관계 행정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
- 또한 「국유재산법」 제7조 등에 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 등을 득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과)은 '22. 6. 29. 감사일 현재 “○○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7건의 공사 구간 내 편입된 국·공유지 105필지 138,849㎡를 특별한 사유 없이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 협의 없이 공사를 시행
 - 그로 인하여 특히 “○○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경우 최대 5년 11개월 동안 국·공유지(29필지 103,364㎡)를 무단 훼손·사용하는 등 국·공유재산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

- ☞ 도로·하천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 사용 협의 없이 공사를 추진한 現 담당 과장 1명 “**훈계요구**”
- ☞ 무단 사용 중인 국·공유지에 대해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 절차를 협의 하도록 “**시정요구**”

14 구례 ○○○○종합복구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건설과)은 '21. 11월부터 '22. 5월까지 섬진강 주변 항구 복구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례 ○○○○종합복구사업” 14건*을 총공사비 1,32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 (배수펌프장) 7건 942억원 / (지방하천) 3건 206억원 / (소하천) 4건 172억원

1. 공사 간접공사비(기타 경비) 제비율 등 과다 계상

-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건설사업에 대해 조달청에서 매년 발표한 ‘토목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을 근거로 전남도 자체 제작·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 설계·시공 편람’에 따라 제비율을 적용 중
-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인정되면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과)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진행한 사업은 ‘전라남도 설계·시공 편람’에 따라 제비율을 적용하면서도, “구례 ○○○○종합복구사업” 중 12건만은 제비율 중 기타경비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계상된 10억 9,772만원을 미감액 * (현재) 5.17~10.0% → (편람상 비율) 4.61~5.84%
 - 또한 5건의 사업에서 안전관리비 반영 불필요 등으로 과다 계상된 2억 2,692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하여 예산 낭비

2. 건설공사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계상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제56조 등에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설사업의 초급 품질관리기술자 인건비는 품질관리비를 미계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과)은 '22. 6. 29. 감사일 현재 “구례 ○○○○종합복구사업” 중 7건에서 불필요한 품질관리활동비가 반영되어 4억 8,966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기타경비 제비율 및 품질관리활동비 등으로 과다 계상된 공사비 18억 1,430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15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협의 등 문화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 등 16개 부서)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346건을 추진
 -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13조 등에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통상 500m 이내) 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안에서 하는 건설공사는 시행 전에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
 -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 등에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9. 1월부터 12월까지 “○○○○ 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을 시행하면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협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준공
- * 관련 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구례 ○○○ ○○
-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게 되었고,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을 검토하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

☞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협의 및 문화재 현상 변경을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시행한 現 담당자 1명 “훈계요구”

16 하수도 설치에 따른 시·도지사 변경인가 절차 등 미이행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하수도 정비 및 재해 복구사업 4건을 추진

1. 시·도지사 변경인가 절차 미이행 등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하수도법」 제11조에 시장·군수는 하수관로의 길이가 10% 이상 증·감 시 시·도지사 변경 인가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6. 5월부터 '21. 12월까지 추진한 “○○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건*의 경우 도지사 변경인가 없이 추진

* ○○ 하수관로 : 관로 연장 5.66km → 5.05km(0.61km, 10.8% 감소)

○○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 관로 연장 0.46km → 1.02km(0.56km, 121.7% 증가)

-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인정되면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22. 6. 29. 감사일 현재 “구례 ○○○○ ○○ 재해복구사업” 등 2건에서 안전관리비 반영 불필요 등으로 3,007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그로 인하여 변경 인가를 득하지 않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기회를 상실하고, 과다 계상된 공사비 3,007만원의 예산 낭비 우려 발생

2. 하수도 정비사업 품질 및 안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제56조 등에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설사업의 초급 품질관리기술자 인건비는 품질관리비를 미계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21. 12월부터 '22. 12월까지 추진 중인 “구례 ○○○○시설 재해복구사업” 등 2건에 불필요한 품질관리활동비가 반영되어 8,555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등에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1·2종 시설물 등의 건설공사는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검토 의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9. 5월부터 '22. 5월까지 9개 사업장의 안전관리비를 공사에 계상하지 않고,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도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검토 의뢰하지 않고 승인 통보
- 그로 인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 8,555만원의 예산 낭비 우려 발생하였고,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

- ☞ 하수도 정비사업 시·도지사 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現 담당자 1명 "훈계요구"
- ☞ 과다 계상된 1억 1,562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3. 모범사례

1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국내 최초 「지리산정원」 조성

소나무 숲을 이용한 국내 최초 “숲 정원”을 테마로한 「지리산정원」 조성으로 전남의 정원문화 발전교두보 마련 및 지역관광 활성화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존 관광산업을 새로운 수요가 창출하는 ‘정원문화’ 관광콘텐츠 개발로 활성화시켜 휴양 1번지인 구례군의 위상 강화 필요
 - 구례군 관광통계 : '19년) 13만명 → '20년) 7만명 → '21년) 8만명('19년 대비 5만명↓)
 - 정원문화 참여자(산림청 통계) : '20년) 218만명 → '25년) 400만명 확산 예정

□ 사업개요

- 기간/대상 : '19. ~ '23.(5개년) / 구례군 광의면, 산동면 일원
- 사업규모 : 10.8ha(군유지)
 - 기존 이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소나무 숲을 이용자 중심의 정원으로 조성
- 사업비 : 90억원(국비 45, 도비 4.5, 군비 40.5)
- 사업내용 : 5개 주제 정원(별빛숲 정원, 하늘 정원, 어울림 정원 등)

□ 추진실적

- 구례군 주관 “지리산정원” 타당성 용역 추진(군비 43백만원) : '17. ~ '18.
- 예산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사전심의(49.5억원) : '18. ~ '19.
 - (내용) 전남형 ‘정원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필요성 및 지원 요청
 - (실적) 국화산림청 방문협의(5회), 도 관련부서 협의(4회), 정원전문가 자문회의(3회)
- 지리산정원 조성사업 추진 : '19. ~ 현재(공정율 70% / '23년 완공예정)

□ 기대효과

- 구례를 찾는 정원관광인구 2배 증가('19년 3만명 → '20년 3.3만명 → '21년 6만명)
- 기존 소규모 민간정원(○○○ 등 2곳)과의 정원투어(남도한비퀴) 연계 관광 만족도 제고
- '20. 3. 전남 제1호 공립수목원 지정(1,148종) 및 '23년 지방정원 지정예정
 - ※ 전국 정원현황 : 국가정원(2개소), 지방정원(조성 27개소, 지정 4개소), 민간정원(74개소)

참 고 자 료

『지리산정원』 조성 관련 자료



- 지리산정원(조성계획) -



- 지리산정원 조성 컨셉 -



- 별빛숲정원 -



- 하늘정원 야간 경관 -



- 와일드정원 -



- 하늘정원 -

2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처리방법 개선

유해야생동물로 포획 및 사체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 및 자원 재활용

□ 추진배경

- 78%가 산지이고 지리산국립공원 등 양호한 서식환경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수확기 고온 날씨로 포획 한계 봉착
- 경기, 강원지역에서 남하하는 ASF로 생태계 파괴 및 양돈 농가 2차 감염 우려

□ 추진실적

1.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탄력 운영 및 포획틀 직영 운영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30명) 운영
 - 성체 포획 시 효과가 극대화되는 번식기(겨울철)에 포획 활동 연장 운영
 - 피해방지단 포획실적 : '20년 기준 전체 포획량 1,059마리 중 975마리(92%)
- (단위: 마리)

종 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123	975	638	24
멧돼지	580	240	177	24
고라니	543	735	461	-

- 방어적 포획시설(철망울타리)에서 포획틀 설치를 확대하여 피해 원인을 차단
- 멧돼지 포획틀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
 - 운영인력 : 환경교통과 삭도추진단(공무원 2명, 공무원직 1명)
 - 운영방식
 - 피해 우려지역 → 선제적 포획틀 설치·운영
 - 농민 피해신고 → 피해 현장조사(전문가 동행) → 포획틀 설치·운영

< 멧돼지 포획틀 설치 사업 >

- ▶ 사업기간 : '20년~'21년(2년간)
- ▶ 예 산 액 : 36,000천원(군비)
- ▶ 설치대수 : 20대('20년 9, '21년 11)
- ▶ 설치장소 : 피해 산동면 등 8개 읍·면

2.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 道 최초 렌더링(멸균처리) 방식 도입

○ 사체 처리방식을 기존 매립방식에서 렌더링* 방식 道 최초 도입

- 2020. 1월 :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 냉동고 제작·설치
- 2020. 3월 : 유해야생동물 폐사체 렌더링 운반·처리 용역 계약체결
- 처리실적

◦ 기 간: 2020. 1. ~ 2022. 6. 현재

◦ 실 적: 1,637마리(멧돼지 441마리, 고라니 1,196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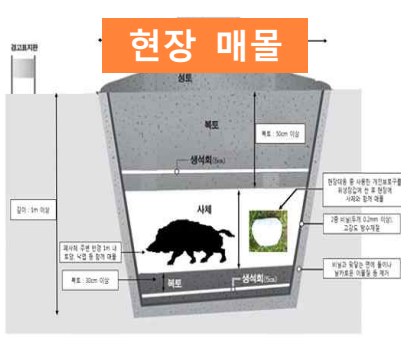
* 사체를 고온멸균 처리한 뒤 기름성분을 짜내 재활용하여 ASF 폐사체 처리 시 감염병 차단에 탁월하고, 잔존물을 퇴비나 사료 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체코, 벨기에 등 해외에서 활용

○ 유해야생동물 철저한 냉동고 반입 확인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

- 유해야생동물 포획 → 냉동고 입고 → 담당자 입고확인(수량 및 사체 상태 육안 확인) → 보상금 지급 → 전문 업체 통해 렌더링 처리
- 사체 처리방식 개선으로 보상금 부정수급 사례 전무

□ 기대효과

-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선제적 피해 예방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농작물 피해 금액 : '19년 25,061천원 → '21년 6,148천원(△18,913천원)
- 포획 유해야생동물 사체를 기존 매립에서 냉동보관 후 렌더링 처리하여 ASF 확산 방지, 2차 환경오염 예방, 사체 재활용

야생동물 사체 처리 방식		
 소 각	 현장 매몰	 렌더링
소각은 여건에 따라 현장 소각, 이동식, 전문 소각장을 이용한 소각을 시행	매립은 깊이 1m 이상 구덩이를 파고 폐수 유출 방지용 비닐을 깔고 토양 생수회 토양 순으로 덮음	멧돼지 폐사체를 고온, 고압으로 멸균상태에서 처리 후 기름을 분리하여 퇴비나 사료로 재이용

3 | 전국 최초 찾아가는 C형간염 무상 검진 및 치료 지원 사업

□ 추진배경

- 예방백신이 없고 증상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감염 시 간암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질환인 C형간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30년까지 퇴치 선언
- C형간염 조기 발견 및 국가검진항목 포함을 위해 대한간학회와 구례군이 업무협약을 맺어 검진·치료 무료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0. 20. ~ 2019. 7. 20.
- 사 업 비 : 후원기관 전액 부담(100백만원)
- 내 용 : 구례군민 대상 C형간염 무료 검진 및 치료제 지원
- 주최/주관 : 대한간학회/구례군보건의료원
- 후 원 : 한국○재단, 사회복지○○○○회, 한국○○○○재단 등

□ 추진실적

- 대한간학회와 MOU 체결 및 간 건강검진·진료행사(2018. 10. 20.)
 - 내 용 : 352명 검사, 진료반(○○○○·○○·○○병원 등 대한간학회 소속 교수) 9명 참석
 - 결 과 : B·C형간염 10명 및 혈관종 등 다수 발견
- C형간염 항체·유전자 검사(2018. 11. 1. ~ 2019. 1. 10.)
 - 전수 검진 실시 : 4,235명
 - 결 과 : 항체양성 48명·유전자 검사 확진자 17명 발견
- C형간염 확진자 진료 행사(2019. 1. 19.)
 - 진료반 : 2명(국제○○병원, ○○○병원 교수)
 - 내 용 : 확진자 17명 대상 간초음파 검사 및 치료제 처방

- C형간염 확진자 치료제 지원(2019. 1. 19. ~ 2019. 4. 13.)
 - 치료제 처방 및 복약 점검
- 확진자 대상 완치 여부 검사 : 2019. 6. 10. ~ 2019. 7. 5.
- C형간염 없는 청정구례 선포식 : 2019. 7. 20.

□ 기대효과

- 국내최초로 C형간염 퇴치를 위해 대한 간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검진 및 치료 무상 지원
 - ※ 1인당 초음파 등 검사비 20만원, 치료제 약 1,100만원 무상 지원
- 침묵의 살인자 C형 간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
 - 검진 및 치료성과, 청정 선포식 등의 언론 보도를 통해 구례군민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C형 간염에 대한 경각심 확산
 - 사업 이후 정부 및 타 지자체 관심 확대
 - ⇒ 전국적인 C형 간염 퇴치 분위기 조성
 - ☞ 전국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질병관리본부 업무협약(2019. 5.~ 7.)
 - 구례군 성공사례를 통한 2020년 국가정책 반영됨
 - ☞ 타 지자체 사업 확대를 위한 자문(전라남도 22개 시·군)
- 지속적 C형간염 환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상한액 한도 내)
 - 한국○○○○재단(기준 중위소득 100%이내)

4. 사전컨설팅 사례

1 | 환매권 행사 기간을 넘긴 토지, 민원 해소를 위한 환매 가능 여부 건

1. 신청사유

- 구례군은 '07. 3. 22. 방광권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07. 9. 5.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취득한 토지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됨
 - 그러나 환매할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를 하지 못함
 - 토지소유자는 구례군에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를 못하게 되었으므로 환매를 요구
 - 그러나 구례군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환매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매를 거부함
- ⇒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환매 사유가 발생했지만, **환매권자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 기간(사업계획 변경 고시일부터 10년)을 넘긴 경우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2. 검토 의견서

- 환매권 행사 기간을 넘긴 토지의 민원 해소를 위한 **환매 가능 여부 : 가능**
 - 환매권자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환매권 행사 기간을 넘겼어도 환매권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환매권 자체를 상실하게 되어 환매권 행사는 불가능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대로 민원인에게 환매권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환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환매를 하더라도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또한 가능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 조사 결과 민원 발생 토지를 환매해 달라는 민원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구례군수에게 환매권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환매할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4. 처분요구서

목 차

① 동물보호센터 운영 부적정(시정)	36
②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개선, 주의)	41
③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46
④ 산림사업 용역 추진 부적정(주의)	50
⑤ 임도시설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54
⑥ 민원업무수당 및 장려수당 지급 부적정(시정, 주의)	59
⑦ 당직수당(일숙직비) 공금 유용(징계, 훈계, 주의)	63
⑧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 누락(시정)	68
⑨ 정리보류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 부적정(시정)	71
⑩ 세입세출외현금 등 공금계좌 세입관리 부적정(시정)	75
⑪ 지식재산권 등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시정)	79
⑫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84
⑬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주의)	87
⑭ 용역 적격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92

⑮	지연배상금 산정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리 부적정(주의)	101
⑯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관리 부적정(주의)	104
⑰	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등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주의)	109
⑱	사회보장급여 지급 등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주의)	114
⑲	구례군○○회 보조금 지원·관리 등 부적정(훈계, 시정, 주의)	120
㉑	농기계 지원사업 등 민간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주의)	128
㉒	도로점용료 등 미부과 및 옥외광고물 사후관리 부적정(훈계, 시정, 주의)	132
㉔	도로·하천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 사용 협의 없이 무단 훼손(훈계, 시정)	137
㉕	건설엔지니어링 공동계약 계열회사 간 참여 제한 부적정(훈계)	141
㉖	구례 ○○○○종합복구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44
㉗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부적정(개선)	150
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협의 등 문화재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153
㉙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등 수도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156
㉚	하수도 설치에 따른 시·도지사 변경인가 절차 등 미이행(훈계, 시정)	165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동물보호센터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친환경농업과)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2020. 00. 00.부터 「동물보호법」, 「구례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관리 개선을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시설인 동물보호센터를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 6. 29. 감사일 현재 26마리의 유기견을 보호 중에 있다.

2. 동물보호센터 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5조 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으로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되, 시·도지사 또는 위탁보호센터 운영자

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¹⁾」 제4조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질병관리, 반환·분양 등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센터 운영자, 의사, 사무직 종사자, 유실·유기동물의 구조원, 보호·관리업무 담당자, 반환·분양업무 담당자 등을 고용하여야 하며, 센터의 규모 및 업무 비중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센터 운영자는 센터의 총괄 운영·관리 업무를 처리하며, 의사는 질병 예찰·치료·관리, 교육, 인도적 처리 등 업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6조에 따르면 2022. 1. 1.부터 직영으로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에도 센터의 장은 인건비, 일반운영비(전기·수도요금, 냉난방기, 물품비, 시설유지비 등), 보호관리비(약제비, 사료비, 사체처리비 등) 등을 필수항목으로 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생산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해 1월말까지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5조에 따르면 센터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하여 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하고, 예찰은 의사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센터 종사자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시설기준, 인력현황 등을 충족하여야 하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하여 의사의 책임 하에 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여 기록하며,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친환경농업과)은 2020. 00. 00.부터 2022. 6. 29. 감사일 현재

1)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

까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자와 수의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소속 직원 2명으로만 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중이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하여 수의사의 책임 하에 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하는데도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수의사가 고용되지 않아 소속 직원들이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2022. 1. 1.부터는 직영으로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에도 전기·수도요금, 냉난방기, 물품비, 시설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약제비, 사료비, 사체처리비 등의 보호관리비 등의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들의 건강상태가 수의사의 책임 하에 예찰되지 않아 체계적 질병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2. 건축용도변경 및 농지전용변경 미신고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은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지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지를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호 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 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례군은 2020. 00월경 (정확한 날짜는 미상) 구례군 용방면 ○○리 000번지 일원에 사업비 150백만원을 투입하여 유기동물 보호시설과 가축방역 소독시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내부결재를 수립하였고, 2020. 00. 00. 친환경농정과에서 종합민원과로 위 사업의 내용으로 건축협의 및 농지전용 신고하여 2020. 00. 00. 농지전용 허가증을 교부²⁾받았고, 2020. 00. 00. 건축신고필증을 교부³⁾받은 후 2021. 00. 00. 동물방역소독시설 신축공사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용도를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동물방역소독시설)로 등재하였으나, 2021. 00. 00.부터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동물보호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협의한 대로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농지법」 등에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한 사항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물 또는 농지전용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 신고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친환경농정과)은 2021. 00. 00. 농지전용 허가 및 건축신고한 대로 동물방역소독시설 신축공사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용도를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동물방역소독시설)로 등재하였으면 동물방역소독시설로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2021. 00. 00.부터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농지전용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물방역소독시설이 아

2) 구례군 종합민원과-00000(2020.00.00.), 농지전용 허가(협의)알림

- (신청인) 구례군수(친환경농정과), (농지소재지) 구례군 용방면 ○○리 000, (전용면적) 000㎡, (전용목적)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부지조성(동물방역소독시설)

3) 구례군 종합민원과-00000(2020.00.00.), 건축협의(동물방역소독시설)

- (구분) 신축, (신고번호) 2020-종합민원과-공용건축물-00, (건축주) 구례군, (주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동물방역소독시설), (건축연면적) 000㎡

닌 [사진]과 같이 동물보호센터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

[사진] 동물보호센터 부당 사용 현황

		
동물보호센터 입구	동물보호센터 외부	동물보호센터 내부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공용건축물이 당초 신고한 건축 및 농지전용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동물방역소독시설로 사용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농지 전용변경을 한 후 동물보호센터로 사용하며, 앞으로 동물보호센터를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개선·주의요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총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다.

2.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다른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따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 제5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평정단위

별 순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 평정서열을 결정하도록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총무과)은 2020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표 1]과 같이 2020년 상반기에 ○○5급 평정단위별 3명, 2020년 하반기에 ○○6급 평정단위별 2명 등 총 5명에 대하여 평정단위별 제출된 순서와 다르게 전체 근무성적평정서열을 부당하게 변경 처리하였다.

[표 1] 근무성적평정서열 부당 변경 현황(2020년)

연번	평정 시기	평정 단위	대상자			근무성적평정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
			직렬	부서	이름	평정단위별 서열		전체 근무성적평정서열		
						순위	정당한 평정점수	순위	실제 평정점수	
1	2020년 상반기 (3명)	○○5급	녹지	○○면	○○○	10	51.7	12	50.7	미등재
2			농업	○○면	○○○	11	51.2	10	51.7	미등재
3			시설	○○○○과	○○○	12	50.7	11	51.2	미등재
4	2020년 하반기 (2명)	○○6급	시설	○○○○과	○○○	4	48.7	25	48.2	미등재
5			시설	○○○○과	○○○	5	48.2	24	48.7	미등재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평정단위별 제출된 순서와 다른 전체 근무성적평정서열 변경으로 인해 비록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근무성적평정상위 선순위와 후순위가 바뀌어 근무성적평정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3. 근무성적평정결과 미공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되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

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조정) 신청 및 결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평정단위별로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총무과)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시 평정단위 별 근무성적평정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 공지한 기간에 인사부서에 요청한 자에게만 평정단위 별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표 2]와 같이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시 평정대상자가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고 있는 경우가 전체 근무성적평정 대상자의 1.3%에서 2.6%에 불과하고, 이의신청 비율은 0%를 나타내는 등 평정결과의 공개로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령의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현황(2020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구분	평정대상자 (명)	공개요청 및 공개자		이의신청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20년 하반기	507	13	2.6	0	0.0
2021년 상반기	528	9	1.7	0	0.0
2021년 하반기	525	7	1.3	0	0.0
2022년 상반기	538	13	2.4	0	0.0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승진자에 대한 자격증가산점 부당 부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으나, 승진임용 시 이미 자격증 가산점이 반영된 자에게는 자격증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승진임용 시 자격증 가산점이 반영된 자에게는 승진 이후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부터는 승진임용 시 반영된 자격증에 대하여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총무과)은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추진하면서 승진임용 시 이미 자격증 가산점이 반영된 자에게는 자격증 가산점을 줄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가 2020. 9. 10.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표 3]과 같이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이미 자격증 가산점이 반영되어 승진한 4명에 대하여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하였다.

[표 3] 자격증 가산점 부당 부여 현황(2022년 상반기)

연번	소속	직렬	계급	성명	자격증명	취득일	자격증 가점	가점부여 부당사유
1	○○○	공업	○급	○○○	건설기계기사	2008.00.00.	0.50	2022.1.1. ○급 승진
2	○○○	농업	○급	○○○	식물보호기사	2017.00.00.	0.50	2022.1.1. ○급 승진
3	○○○	시설	○급	○○○	토목기사	2008.00.00.	0.50	2022.1.1. ○급 승진
4	○○○	시설	○급	○○○	토목기사	2014.00.00.	0.50	2022.1.1. ○급 승진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부적정한 가산점 부여로 다른 직원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 ①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결과를 평정대상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제도상 개선)
- ② 앞으로 승진임용 시 자격증 가산점이 반영된 자에게는 승진 이후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부터는 승진임용 시 반영된 자격증에 대한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총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징계요구부서의 6급 이하 소속 공무원 21명에 대한 경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업무를 추진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직원 64명에 대한 피의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 중이다.

2. 부당한 징계감경 및 징계부가금 미부과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절도한 경우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해당 징계 외에 횡령·절도로 취득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대상인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절도한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

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절도한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절도한 비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1배 이상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하여야 하고,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감경없이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기획예산실)은 2019. 00. 00. 광주지검○○지청으로부터 횡령, 절도로 구속식 처분 통보를 받은 지방○○6급 ○○○를 2019. 00. 00 경징계 요구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절도 건에 대하여는 징계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1배 이상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요구하지 않고 징계만을 요구하였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절도 건은 「지방공무원 평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라 ‘감봉’이상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같은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징계도 감경할 수 없는데도 2019. 00. 00. ○○팀장(지방○○6급 ○○○)이 郡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상훈감경이 가능하다 진술하여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절도 건이 상훈감경되어 ‘견책’ 처분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기소유예 결정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기획예산실)은 2019. 00. 0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방○ ○7급 ○○○에 대한 상해죄 기소유예 결정 처분을 통보받았는데도 군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2019. 00. 00. 부당하게 자체 ‘훈계’ 처분하였다.

그로 인하여 군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 심사 청구서에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 제9장 복무 및 징계의 3. 징계편에 따르면 실제로 심사를 하기 전에 권한있는 징계처분권자가 적법하게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심사청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 후에는 심사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징계요구부서의 경징계 요구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처분할 때는 의결 결과에 대하여 징계요구부서의 심사 청구 의사를 확인한 후 징계대상자에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총무과)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징계요구부서(기획예산실)로부터 [별표] “징계의결 심사 절차를 위반한 징계 명세”와 같이 총 19명에 대하여 경징계 요구를 받아 징계업무를 처리하면서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를 징계요구부서(기획예산실)의 심사 청구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을 함께 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징계의결 결과에 대한 징계요구부서의 심사 권한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앞으로 징계법령에 따라 징계 및 징계부가금 업무 및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업무를 처리하고,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를 처분할 때는 그 의결 결과를 징계요구부서에 통보하여 징계요구부서의 심사 청구 의사를 확인한 후 징계대상자에게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주요요구

제 목 산림사업 용역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산림소득과)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조림·숲가꾸기·임도·사방 등 산림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1,784백만원으로 124건의 산림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을 추진하였다.

2.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대가에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비 미계상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은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는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이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의 경우에는 엔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업무처리 요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따른 설계·감리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역대가에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산림소득과)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총 124건의 산림사업 설계 및 감리용역을 추진하면서 [별표]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대가에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비 미계상 명세”와 같이 2019년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설계용역 등 65건의 산림사업 설계 및 감리용역 용역대가에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비를 계상하지 않는 채 산림사업 용역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3. 산림사업 설계용역 발주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면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산림청

1)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장에게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와 설계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산림기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산림소득과)은 2020. 1월부터 2020. 12월까지 [표]와 같이 구례○○○ ○○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재무과에 의뢰하여야 하는데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의뢰하였다.

[표] 무자격자와 계약 체결한 산림사업 설계용역 현황(2020. 1월~12월)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계약기간	계약업체	등록자격	용역비
계	4건				48,412
1	구례○○○ ○○사업 실시설계용역	2020.00.00.~ 2020.00.00.	○○건설이엔지(주)	건설기술 용역업	19,161
2	2020년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0.00.00.~ 2020.00.00.	(주)○○기술공사		13,226
3	2020년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0.00.00.~ 2020.00.00.	(주)○○기술공사		5,125
4	○○○시설물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2020.00.00.~ 2020.00.00.	○○기술개발(주)		10,900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기술 수준 등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산림기술용역업체의 참여 기회가 상실되고, 구례군 산림 행정의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앞으로 산림사업 설계용역 사업대가에 손해배상보
험·공제가입비를 계상하고, 산림사업의 설계용역을 발주 시 산림기술용업으로
등록한 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림사업 용역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
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임도시설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산림소득과)

훈계대상자 구례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산림경영과 유지·관리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보조금 3,218백만원으로 23건의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보 ○○○은 2018. 00. 00.부터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임도시설사업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임목부산물 처리비 설계 미반영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맞게 임도(간선·지선·작업임도) 시설의 설계 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맞게 절·성토면 및 노면의 구조물을 반영하여야 하고, 노면·절토대상지에 있는 임목(관목을 포함)과 그 뿌리, 표토 등을 전량 제거·반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임도시설의 설계 시 임목(관목을 포함)과 그 뿌리, 표토 등을 전량 제거·반출될 수 있도록 임목부산물 처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산림소득과)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표 1]과 같이 2019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등 총 8건의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임도시설의 설계에 임목의 뿌리와 가지 등 임목부산물(가치)이 전량 제거·반출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임목부산물 처리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표 1] 임도시설사업 추진 시 임목부산물 처리비 미계상 현황(2019. 5월~2022. 5월)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km)	사 업 비				사업기간	임목부산물 처리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8건	8.91	2,061	1,144	383	534		
1	2019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1.63	380	266	11	103	2019.00.00.~ 2019.00.00.	미계상
2	2019년 ○○○○지구 작업임도 개설사업	0.20	33	23	1	9	2019.00.00.~ 2019.00.00.	미계상
3	2019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1.16	303	212	9	82	2019.00.00.~ 2020.00.00.	미계상
4	2020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2.20	472	330	24	118	2020.00.00.~ 2020.00.00.	미계상
5	2021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1.62	447	313	27	107	2021.00.00.~ 2021.00.00.	미계상
6	2021년 ○○○○지구 작업임도 개설사업	0.10	39		28	11	2021.00.00.~ 2022.00.00.	미계상
7	2021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0.90	179		131	48	2021.00.00.~ 2022.00.00.	미계상
8	2022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1.10	208		152	56	2022.00.00.~ 2022.00.00.	미계상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잘라낸 나무와 그 부산물(가지, 뿌리) 일부가 현장에 존치되어 집중호우·태풍·산불 등에 의한 2차 피해에 취약한 형태의 임도구조를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임도시설 설치계획 미준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청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5년 단위로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임도는 임도설치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임도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사업개요, 사업방향, 설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사업의 이해를 돕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5년 단위로 계획된 ‘제4차(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도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대상지에 임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한편 구례군은 2015. 6. 23.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임도 노선 및 설치구간 등 사업계획을 포함한 ‘제4차 임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산림소득과)은 2019. 7월부터 2020. 12월까지 [표 2]와 같이 5년 단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2019년 ○○○○지구 작업임도 개설사업 등 3건의 임도시설사업을 임의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2] 5년 단위 계획에 미포함된 임도시설사업 현황(2019. 7월~2020. 12월)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km)	사 업 비				사업기간	5년 단위 계획 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3건	3.56	808	565	34	209		
1	2019년 ○○○○지구 작업임도 개설사업	0.20	33	23	1	9	2019.00.00.~ 2019.00.00.	미반영
2	2019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1.16	303	212	9	82	2019.00.00.~ 2020.00.00.	미반영
3	2020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2.20	472	330	24	118	2020.00.00.~ 2020.00.00.	미반영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3]과 같이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총 8건의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추진하였다.

[표 3] 임도시설사업 주민설명회 미개최 현황(2019. 5월~2022. 5월)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km)	사 업 비				사업기간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8건	8.91	2,061	1,144	383	534		
1	2019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1.63	380	266	11	103	2019.00.00.~ 2019.00.00.	미계상
2	2019년 ○○○○지구 작업임도 개설사업	0.20	33	23	1	9	2019.00.00.~ 2019.00.00.	미계상
3	2019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1.16	303	212	9	82	2019.00.00.~ 2020.00.00.	미계상
4	2020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2.20	472	330	24	118	2020.00.00.~ 2020.00.00.	미계상
5	2021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1.62	447	313	27	107	2021.00.00.~ 2021.00.00.	미계상
6	2021년 ○○○○지구 작업임도 개설사업	0.10	39		28	11	2021.00.00.~ 2022.00.00.	미계상
7	2021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0.90	179		131	48	2021.00.00.~ 2022.00.00.	미계상
8	2022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1.10	208		152	56	2022.00.00.~ 2022.00.00.	미계상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산주 및 인근 주민으로부터 임도시설사업 관련 2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총 6,249천원¹⁾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등 구례군의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임도시설사업 정기하자검사 미 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1) 산주의 ○○ 재배지 우회 요구로 2019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노선변경 : 3,250천원, 산주의 민원요구로 2020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노선 일부 변경 : 2,999천원

따라서 구례군은 임도시설사업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임도시설사업의 경우 2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산림소득과)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별표] “임도시설사업 정기하자검사 실시 명세”와 같이 2019년 ○○○○지구 신설임도 개설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이 파손되면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임도시설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입목부산물 처리비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채 현장에 방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민원업무수당 및 장려수당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재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민원업무 담당자 85명에게 민원업무 수당을 지급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및 위생·하수·쓰레기처리장 등 처리업무 종사자 65명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였다.

2. 민원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9] 제11호 가목에 따르면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V. 특수근무수당 2. 특수업무수당 다. 수당별 업무처리방법 6)특수직무수당 편에 따르면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 근무자가 ① 별도로 상설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고 ②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하며 ③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를 직접 처리하는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되, 제도의 운영이나 법령의 해석에 대한 질의, 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 상담 등 부가적인 업무처리는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제도의 운영이나 법령의 해석에 대한 질의, 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 상담 등 부가적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위 ①부터 ③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에게만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재무과)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별표 1] “민원업무수당 부적정 지급 명세”와 같이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에서 근무하였으나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상시처리하지 않고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지 않은 ○○○○과 지방○○○급 ○○○ 등 8명에게 적게는 419천원부터 많게는 1,300천원까지 총 5,243,520원을 민원업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3. 장려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9]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 이하의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장려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V. 특수근무수당 가. 지급대상 편에 따르면 장려수당은 영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례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3조 [별표 3]에 따르면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월 15만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장려수당으로 월 5만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상시로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게만 장려수당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재무과)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별표 2] “장려수당 부적정 지급 명세”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는 하였으나 지급대상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장 지방○○5급 ○○○에게 상하수도 시설 근무 장려수당으로 719,35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또한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는 하였으나 상시로 직접 종사하지 않는 ○○○○과 지방○○6급 ○○○ 등 9명에게 적게는 750천원부터 많게는 4,500천원까지 총 24,817,710원을 위생·하수·쓰레기처리장 근무 장려수당으로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 ① 부당하게 지급한 민원업무수당 5,243,520원과 장려수당 25,537,060원 등 총 30,780,580원을 회수하고(시정)
- ② 앞으로 민원업무수당 및 장려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징계·훈계·주의요구

제 목 당직수당(일·숙직비) 공금 유용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총무과)

징 계 대 상 자 ① 구례군 ○○과 ○○직 ○○○

② 구례군 ○○과 지방○○○○사 ○○○

징 계 의 종 류 ① 징계, ②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구례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2019년부터 2022년 5월 현재까지 당직명령에 따라 매일 2명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당직수당(일·숙직비)¹⁾을 1인당 6만원씩 총 198,240천원을 지급하였다.

○○직 ○○○은 2019. 00. 00.부터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팀 업무 보조 담당자로, 지방○○○○사 ○○○은 2018. 00. 00.부터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당직수당(일·숙직비) 업무 담당자로, 지방○○주사 ○○○는 2020. 00. 00.부터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당직수당(일·숙직비) 업무 담당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일·숙직비 지급 : 2019년 6월까지는 평일, 일요일 숙직은 5만원, 금·토·휴일 숙직은 6만원, 일직은 6만원으로 지급하다가 2019년 7월부터는 6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구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및 「구례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2조에 따르면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를 배치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당직 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2. 일반운영비 2-1 사무관리비 다. 운영수당 편에 따르면 일·숙직비는 일정기간 단위(일주일, 10일 등)로 당직업무 담당부서에서 개산금(정액)으로 인출하여 당일 일·숙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례군은 당직근무 담당자인 ○○○○사 ○○○이 당직수당(일·숙직비)을 월 1회 개산금으로 0백 내지 0백여만 원을 집행하여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직 ○○○이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당직근무 당일 일·숙직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월 단위로 당직수당(일·숙직비)을 전용계좌에 인출하여 관리하므로 전용계좌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금 횡령·유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례군(총무과)은 2020. 00월부터 2022년 00월까지 ○○직 ○○○이 당직수당(일·숙직비) 전용계좌에서 총 0회에 걸쳐 0,000,000원을 전용계좌에서 본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자녀 학비나 기숙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약 1주일 1회에 000여만원에서 000여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당일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일·숙직비)을 지급하기 전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00,000,000원을 유용하였는데도 당직수당(일·숙직비) 전용계좌에 대한 점검을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직 ○○○이 당직수당(일·숙직비) 00,000,000원을 자녀 등
 록금 사용 등으로 유용한 결과를 가져왔다.

4.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가. ○○○의 경우

○○○은 2019. 00. 00.부터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
 ○팀 업무를 보조하면서 당직수당(일·숙직비) 전용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를 관리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당직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20. 00월부터 2022. 00월까지 [표]와 같이 2020. 00. 00.
 에 0,000,000원을 당직수당(일·숙직비) 전용계좌에서 본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
 는 등 총 0회에 걸쳐 0,000,000원을 자녀 학비나 기숙사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
 용하였다.

[표] ○○○이 일·숙직비를 개인계좌에 이체한 현황(2020. 00월~2022. 00월)

(단위 : 천원)

일자	금액	사 용 처	비 고
계	0,000		
2020.00.00.	0,000	○○○○ 신청을 위한 ○○○ ○○○로 사용	전용계좌에서 ○○○ 개인계좌로 이체
2021.00.00.	0,000		
2021.00.00.	000	○○ ○○ ○○○에 사용	
2021.00.00.	000	○○ ○○○○○로 사용	
2022.00.00.	0,000	○○ ○○ 비용으로 사용	

자료 : ○○○의 문답서 내용 재구성

또한 평일에는 당직수당(일·숙직비)을 당일 전용계좌에서 12만원(1인 6만원
 × 2인)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일
 에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지급일 전에 약 1주일 1회에 000여만 원에서
 000여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당일 당직근무자에게 일·숙직비를 지급하기 전까
 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전용계좌 잔액이 부족하여 당직수당(일·숙직비)
 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2020. 00. 00.에 0,000,000원을 본인 계좌에서 “구례군

청”이라고 기재하여 전용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직수당(일·숙직비)을 지급하였다.

결국 2020. 00월부터 2022. 00월까지 당직수당(일·숙직비) 전용계좌에서 일·숙직비 공금을 자녀 등록금 사용 등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당직수당(일·숙직비) 지급이 필요하면 [별표] “전용계좌에 입금한 명세”와 같이 전용계좌에 입금시키는 등으로 총 00,000,000원의 공금을 유용하였다.

나. ○○○의 경우

○○○은 2018. 00. 00.부터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약 ○년 ○개월간 ○○과 ○○○○팀에서 당직수당(일·숙직비)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당직수당(일·숙직비)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월 단위로 당직수당(일·숙직비)은 전용계좌에서 인출되어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당직수당(일·숙직비) 전용계좌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금 횡령·유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당직수당(일·숙직비) 지급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유로 전용계좌 확인이나 점검을 하지 않아 2020. 00월부터 2022. 00월까지 업무 보조자인 ○○직 ○○○이 일·숙직비 공금을 유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징계요구 양정

당직수당(일·숙직비) 공금을 유용한 ○○직 ○○○의 행위는 「구례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배 된 것으로 같은 규정 제43조 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당직수당(일·숙직비) 전용계좌 관리 및 점검을 소홀히 한 지방○○○○사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 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 ① 당직수당(일·숙직비) 공급을 유용한 ○○직 ○○○을 「구례군 공무원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43조에 따라 “징계” 및 당직수당(일·숙직비) 전용계좌 관리 및 점검을 소홀히 한 지방○○○○사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하고(징계)
- ② 당직수당(일·숙직비) 전용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를 “훈계”하며(훈계)
- ③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수당(일·숙직비) 전용계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 누락

관계기관(부서) 구례군(경제활력과, 문화관광실, 스포츠산업과,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구례 특산물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는 물론 특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을 조성하는 등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준공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수영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¹⁾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따르면

- 관람석 없는 수영장은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91133)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관람석 있는 수영장은 실내경기장 운영업(91111)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관람석 없는 수영장 및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영장 및 임대수익 사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비와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급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경제활력과 등 4개 부서)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표]와 같이 관람석 없는 수영장 및 수익 사업용 임대건축물을 공급(신축 등)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약 422,772,610원²⁾이 발생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표]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액 현황(2019. 5월~2022. 5월)

(단위 : 원)

사업명 (공사명)	공사 기간	공사 시설비(매입액)			관리부서
		총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대상)	
5건		4,650,498,760	4,227,726,150	422,772,610	
○○○○ ○○○	2020~2021년 (2년)	1,201,658,410	1,092,416,738	109,241,672	경제활력과
○○○ ○○○○ 및 ○○○○기반시설 특선판매장 등	2018~2021년 (5년)	509,829,970	463,481,790	46,348,180	문화관광실
○○○○○	2021~2022년 (2년)	1,898,039,690	1,725,490,627	172,549,063	스포츠산업과
○○○○○○○(펜션) 증축	2019~2020년 (2년)	996,195,690	905,632,450	90,563,240	지리산 정원관리사업소
○○○○ 증축	2021년 (1년)	44,775,000	40,704,545	4,070,455	지리산 정원관리사업소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2) 회계사(세무사) 협조를 받아 정확한 환급액을 산출 후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세무서의 환급액 인정여부에 따라 환급액이 변경될 수도 있음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422,772,610원을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 하고, 앞으로 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정리보류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환경교통과, 재무과, 안전도시과, 경제활력과, 구례읍)

내 용

구례군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무재산자에 대한 정리보류(결손처분) 업무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19조에 따르면 정리보류(결손처분)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르면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시행 2019. 1. 1.)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실종선고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고, 관내의 이장 등을 통한 거주조사, 과세자료 등을 통한 재산조사, 인허가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를 증빙서류와 함께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의 [별지 제26호 서식] ‘결손처분표’ 등의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전라남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¹⁾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결손처분 운영요령」 등에 따르면 결손처분을 한 후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나 행방 등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재산, 행방, 직장, 사업체 등을 조사하여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체납자에 대한 수색과 조사 등을 통하여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추진하며, 결손처분 후에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환경교통과, 재무과, 안전도시과)은 2019. 5월부터 2021. 12월 까지 [별표 1] “지방세외수입 무재산 결손처분 명세”와 같이 체납된 지방세외수입 36건 32,558천원에 대하여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을 추진하면서 현지출장한 조사보고서, 체납자의 자택 등에 대한 수색조서,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무재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서식으로 갈음하여 결손처분 결정을 하였고, 체납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참고하여 거주사실이 있는 타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재무과의 과세자료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망을 통하여 예금 및 급여 등 적극적인 재산조회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결손처분을 결정한 후 정기적으로 체납자 재산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거나 체납자의 행방 등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등 정리보류(결손처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공평과세와 자주재원 확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전라남도 세정과-0000(2020. 00. 00.) 공문

2. 사망자에 대한 채납자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민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997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 정리를 하여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지방세외수입을 부과하기 전에는 납세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납세자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확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 등을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리보류된 지방세에 대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소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경제활력과, 환경교통과, 구례읍)은 2019. 5월부터 2022. 5월 까지 [별표 2] “지방세외수입 채납자 중 사망자 명세”와 같이 2017. 00. 00. 사망한 ○○○에게 2022. 00. 00. 의무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309천원을 부과하는 등 총 12건 3,173천원을 사망자에게 부과하였고,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 취소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시장사용료를 채납한 ○○○ 등 44건 3,230천원은 부과한 후 납세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거나 상속자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징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의무보험 지연가입 과태료를 채납한 ○○○ 등 사망자 43건 10,884천원에 대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2022. 6. 29. 감사일 현재 시효완성 정리를 하지 않아 실제보다 체납액이 과다하게 계상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구례군은 지방세외수입의 체납관리업무 소홀로 체납액이 증가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교부세 산정 수입액이 76백만원²⁾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의 확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중 사망자에게 부과한 12건 3,173천원은 부과취소하고, 부과한 후 납세자가 사망한 44건 3,230천원은 상속자에게 부과하며, 징수권이 소멸된 43건 10,884천원은 시효완성 정리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시에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재산압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 략

2) 지방교부세 산정 수입액 감소액 산정

(단위 : 백만원)

연도	전전전년도 미징수액(A)	전전년도 미징수액			반영액 [C=(B-A)*180%]
		불납결손액(c)	미징수액(d)	계(B=c+d)	
2022	763	83	727	810	85
2021	951	90	763	853	-177
2020	1,083	225	951	1177	168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연도별 반영액 합산액)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등 공금계좌 세입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친환경농정과, 문화관광실, 건설과, 재무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경제활력과, 평생교육과, 보건의료원,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세입 계좌, 세출 계좌,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등 공금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보증금 등을 예치·관리하고 있다.

2.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미조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 제81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납입된 금액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니거나 보증금 등의 보관시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보관금 반환청구 사실을 소멸시효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통보하여야 하고, 그래도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5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에 편입시켜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친환경농정과, 문화관광실, 건설과, 재무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경제활력과)는 2022. 6. 29. 감사일 현재 [별표 1] “반환기간이 경과한 보관금 명세”와 같이 2011. 00. 00. 〇〇〇이 예치한 보관금 5,000원 등 반환기간이 경과한 137건 48,871천원을 정당한 채주에게 통보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반환기간 5년이 경과하여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는데도 보관금을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예치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채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권에게 반환청구 가능 사실 미통보로 인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구례군이 해당 금원을 세입처리하더라도 향후 반환청구권자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장기 보관 금융계좌 세입조치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개설한 계좌의 용도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잔액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주민복지과, 문화관광실, 평생교육과, 보건의료원)은 2022. 6. 29. 감사일 현재 [별표 2]의 “공금예금 미처리 명세”와 같이 개설사유를 알 수 없거나 사업 완료 등으로 세입처리 해야 할 현금 등 7건 78,602천원을 아무런

조치 없이 보통예금 계좌에 방치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이 지방세입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공금계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수납금의 납입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지정된 금고(金庫)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지역에 따라 지정된 기한내에 금고(金庫)에 납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은 2021. 9월부터 2022. 6월까지 ○○ ○○체험장 내 ○○○○를 운영하면서 2021. 9. 13.부터 2021. 11. 28.까지 징수한 판매액 518천원을 적게는 28일, 많게는 104일 동안 세입처리를 하지 않다가 2021. 12. 25. 세입처리 하였고, 2022. 1. 4.부터 2022. 6. 12.까지 징수한 판매액 314천원도 적게는 12일, 많게는 171일 동안 세입처리 하지 않다가 2021. 6. 23. 세입처리하였다.

또한 [표]와 같이 2022. 1. 15.부터 2022. 6. 20.까지 ○○○○○○교육장 입장료 99천원과 체험료 375천원을 징수하였는데도 2022. 6. 29. 감사일 현재 적게는 9일, 많게는 164일 동안 세입처리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수납금을 세입처리 하지 않아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수납금 미세입 처리 명세(2022. 1월~6월)

구분	정수 기간	세입일	미세입 금액(원)	정수 방법
계			474,943	
○○○○○○교육장 입장료	2022.01.15.~2022.06.20.	-	99,528	카드
○○○○○○교육장 체험료	2022.04.01.~2022.06.20.	-	375,415	카드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위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조속한 시일에 감사결과를 검토하여 세입 및 반환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반환기간 5년이 경과한 137건 48,871천원, 개설한 예금계좌에서 사업 완료 등으로 세입 처리해야 할 예금 7건 78,602천원, ○○○○○○교육장 입장료 및 체험료로 수납된 474천원 등 총 127,947천원을 세입 처리하고, 앞으로 수납금은 발생 즉시 세입 처리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지식재산권 등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재무과, 보건의료원)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식재산권을 관리·처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2. 등록료 미납으로 지식재산권 권리 소멸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특허법」 제79조에 따르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르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를 내야 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지식재산권인 특허권과 디자인권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가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산림소득과, 친환경농정과¹⁾)은 2019년부터 2022. 5월까지 [표 1]와 같이 ○○○○○기능이 구비된 ○○○장치 등 5건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매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이 소멸되었다.

[표 1] 등록료 불납으로 인해 소멸된 지식재산권 현황(2019~2022. 5월)

(단위 : 원)

구분	출원 번호	출원 일자	발명의명칭	출원인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소멸 등록일	최종 등록료	관련 부서
특허 실용신안	***** *****	2007. 00.00	○○○○○기능이 구비된 ○○○장치	구례군 ○○○	***** *****	2010. 00.00.	2022. 00.00.	303,850	농업기술센터
	***** *****	2008. 00.00	기능성 ○○의 ○○방법	구례군 ○○○○ ○협력단	***** *****	2012. 00.00.	2020. 00.00.	220,420	농업기술센터
디자인	***** *****	2014. 00.00.	○○○ 상자	구례군	***** *****	2015. 00.00.	2019. 00.00.	37,500	산림소득과
	***** *****	2014. 00.00.	○○○ 상자	구례군	***** *****	2015. 00.00.	2019. 00.00.	37,500	친환경농정과
	***** *****	2014. 00.00.	○○○ 상자	구례군	***** *****	2015. 00.00.	2019. 00.00.	37,500	친환경농정과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및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검색 결과 재구성

그로 인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지식재산권의 기술 가치, 사업성 여부, 활용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절차 없이 권리가 소멸되어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다.

3. 지식재산권 관리대장 미작성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1) 산림소득과와 친환경농정과는 감사지적사항이 감사대상 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 관계부서에서는 제외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은 지식재산으로 공유재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지식재산권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하여도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구례군의 세입을 증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은 2022. 6. 29. 감사일 현재 지식재산권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없고, 2009년부터 2022. 5월까지 취득한 [별표 1] “구례군 지식재산권 명세”와 같은 35건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하여 취득 및 관리에 관한 공유재산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지식재산권 효율적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지식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 소홀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2항,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

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재정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재무과, 보건의료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별표 2]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산출 명세"와 같이 구례군 ○○면 ○○리 000(165.30㎡)를 ○○○가 대부계약도 없이 무단점유 사용하는 등 총 5명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900천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등 공유재산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미징수로 인하여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지식재산권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어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및 처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총괄부서 지정 및 대장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구례군 ○○면 ○○리 000(165.30㎡) 등 5건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900천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환경교통과)

훈 계 대 상 자 ① 구례군 ○○○○○과 지방○○주사보 ○○○

② 구례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표 1]와 같이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 신고대상 현황

구 분	요 건	관련 법령	비 고
집단급식소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사회복지시설 및 200명 미만 유치원 제외
식품접객업	200 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대규모점포	3,000 제곱미터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관광숙박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농수산물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12호	

자료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재정리

2. 관계법령(판단기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은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례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 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나 재활용되는지를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9조에 따르면 점검기관은 폐기물 관련 미신고 사업장의 적발 및 근절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수리하여 준수사항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하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환경교통과)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표 2]와 같이 ○○○○○식당 등 14개 사업장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수시점검도 실시하지 않는 등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 미신고 현황(2019. 5월~2022. 5월)

연번	구분	업소명	소재지	비고
1	관광숙박업	○○○○식당	구례군 ○○면 ○○길 000	휴업
2	관광숙박업	○○○○○○호텔	구례군 ○○면 ○○○온천로 000	
3	관광숙박업	○○○ ○○○○○○리조트	구례군 ○○면 ○○○로 000	휴업
4	집단급식소	○○병원	구례군 ○○읍 ○○○길 000	
5	집단급식소	구례○○○병원	구례군 ○○읍 ○○○길 000	
6	집단급식소	○○○○○○병원	구례군 ○○읍 ○○로 000	
7	집단급식소	구례○○○병원	구례군 ○○읍 ○○길 000	
8	집단급식소	(주)○○○ ○○○센터	구례군 ○○면 ○○○○○로 000	
9	집단급식소	구례○○학교	구례군 ○○읍 ○○로 000	
10	집단급식소	전남○○○○고등학교	구례군 ○○읍 ○○로 000	
11	집단급식소	구례○○○	구례군 ○○읍 ○○로 000	
12	집단급식소	구례○○○학교	구례군 ○○읍 ○○○○길 000	
13	집단급식소	구례○○○○학교	구례군 ○○읍 ○○로 000	
14	집단급식소	구례○○○학교	구례군 ○○읍 ○○길 000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처리하거나 음식물 폐기물 처리·재활용업체 등에 위탁처리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미신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다는 이유로 구례군에서 수집·운반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관리·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및 점검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보 ○○○과 지방○○주사보 ○○○를 “훈계”하고(훈계)
- ② 미신고 14개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를 받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옥외광고물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안전도시과)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지역 등 법령이 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표시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표시기간 연장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표시기간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상기 내용을 위반할 경우 군수는 광고물을 표시나 설치한 자 등에게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이행 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옥외광고 산업 조례”라고 한다) 제3조에 따르면 군수는 허가나 신고를 접수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종료일 도래 30일 전에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표시기간 연장기한을 안내하고 연장신고를 받거나 신고를 아니한 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도시안전과)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표 1]과 같이 (주)○○○○○ 등 9개소가 표시기간 만료일이 적게는 40일부터 많게는 584일까지 도과하였는데도 자진 정비 계고나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연장신고를 수리하였다.

[표 1]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만료 30일 후 연장신고 현황(2019. 5월~2022. 5월)

연번	허가신고일	연장신고일	만료일	도과일	업소명	소재지
1	2020-00-00	2020-00-00	2020-00-00	49	○○○	구례군 ○○읍 ○○리 000
2	2019-00-00	2019-00-00	2018-00-00	584	○○○○○	구례군 ○○면 ○○리 000
3	2021-00-00	2021-00-00	2021-00-00	45	○○○	구례군 ○○읍 ○○리 000
4	2022-00-00	2022-00-00	2021-00-00	232	○○○	구례군 ○○읍 ○○리 000
5	2022-00-00	2022-00-00	2021-00-00	232	○○○	구례군 ○○읍 ○○리 000
6	2021-00-00	2021-00-00	2021-00-00	38	○○○	구례군 ○○읍 ○○리 000
7	2021-00-00	2021-00-00	2021-00-00	40	○○○	구례군 ○○읍 ○○리 000
8	2019-00-00	2019-00-00	2019-00-00	128	○○○	구례군 ○○읍 ○○리 000
9	2021-00-00	2021-00-00	2021-00-00	74	○○○	구례군 ○○면 ○○리 000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미구성 및 미운영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옥외광고물법」 제7조에 따르면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옥외광고 산업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관련 업무 공무원,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그 밖에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 규모 이상 광고물의 표시허가를 승인하려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안전도시과)은 2006. 1. 18.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대형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관계공무원·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옥외광고물법」 제9조에 따르면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 등 8가지¹⁾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

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광고물을 최초 설치 허가 신고를 받거나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을 하려는 경우 공중 설치물의 낙하 사고 등을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안전도시과)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신고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표 2]와 같이 남촌민속가든 2건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였다.

[표 2] 안전점검 미 실시 옥외광고물 현황(2019. 5월~2022. 5월)

연번	허가신고일	연장신고일	업소명	소재지	면적(㎡)	종류
1	2011.00.00.	2020.00.00.	○○○○가든	구례군 ○○면 ○○○○○로 000	15.7	벽면이용간판
2	2011.00.00.	2020.00.00.	○○○○가든	구례군 ○○면 ○○○○○로 000	5.4	지주이용간판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신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광고물에 군민들이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1) 1.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단 벽면에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으로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평 모형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특정광고물 중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광고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 ①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시정)
- ② 앞으로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업무 시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경우 안점점검을 받고 설치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용역 적격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환경교통과, 문화관광실, 재무과)

훈 계 대 상 자 ① 구례군 ○○○○과 지방○○주사 ○○○

② 구례군 ○○○○실 지방○○주사 ○○○

③ 순천시 ○○○○○과 지방○○주사보 ○○○

④ 환경대학교 ○○○○○센터 ○○주사보 ○○○

⑤ 구례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0. 00. 00.부터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 ○○자리사업 용역 담당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지방○○주사 ○○○은 2017. 00. 00.부터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실에서 ○○지구 ○○○○ 사업 조성 용역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주사보 ○○○은 2018. 00. 00.부터 2019. 7. 29.까지 ○○○○실에서 ○○○ ○○○ 개발

용역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주사보 ○○○는 2017. 00. 00.부터 2020. 1. 12. 까지 ○○과에서 용역 계약 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보 ○○○는 2021. 00. 00.부터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용역 계약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호) 제2절 평가기준 편에 따르면 세부기준의 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에 따라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후 지체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을 발표하며,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할 경우 해당 업체가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가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입찰 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구례군은 ○○○ ○○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2019. 00. 00. 적격심사 시 기술인력평가는 “문화재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 소재 ○○ ○○○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실시설계 용역(이

하 “○○○ 콘텐츠 개발 용역”이라 한다)을 입찰 공고하였고, 2019. 00. 00. 최저가입찰 1순위 업체((주)○○○○○○○○)가 제출한 용역실적에 대하여 사업부서(문화관광실)의 실적확인을 거쳐 계약부서(재무과)에서 적격심사한 후 계약(금액 120,585,500원)을 체결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례군(문화관광실)은 2019. 00월 적격심사 참가업체((주)○○○○○○○○)가 제출한 [표 1]과 같이 <○○ 청년, ○○의 삶> 전시용역 등 3건의 실적은 입찰공고시 기술인력평가 제한사항인 문화재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실적으로 인정하여 계약부서(재무과)에 적격심사 평가 대상 용역실적으로 제출하였다.

[표 1] (주)○○○○○○○○ 용역실적 부당 인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실적인정금액	발주처
1	<○○ 청년, ○○의 삶> 전시용역	2016.00.00.~2016.00.00.	77,777	○○광역시 ○○○○박물관
2	<○, ○○를 빛다> 전시용역	2017.00.00.~2017.00.00.	73,719	○○광역시 ○○○○박물관
3	제00회 ○○○○○○ 큰잔치 대행	2018.00.00.~2018.00.00.	150,000	(주)○○○헬로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재무과는 2019. 6월 ① 입찰공고문에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부서(문화관광실) 확인 후 제출하도록 명시하였고 ② 사업부서(문화관광실)에서 용역실적으로 인정하여 적격심사 시 제출된 건이라는 사유로 문화관광실이 용역실적으로 제출한 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항목인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지표에 만점(10점)을 부여하여 (주)○○○○○○○○를 부당하게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표 2]와 같이 정당한 적격심사 결과대로라면 적격통과점수(85점) 미달(적격심사 점수 81.58점)로 낙찰자가 될 수 없는 (주)○○○○○○○○가 부당하게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차순위 최저가입찰업체가 적격심사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 콘텐츠 개발 용역 적격심사 재산정 현황

심사항목		배점	구례군 적격심사 점수	정당 평가시 점수
계		100	85.58	81.58
1. 용역수행능력		40	40	36
	가. 기술인력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10	10	6
	나. 경영상태	30	30	30
2. 입찰가격		60	45.58	45.58
3. 신인도		+3~-3	0	0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기술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이행실적 증명서 등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위 심사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고, 해당 기한까지 보완·추가요구한 서

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하면 심사에서 제외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평가 항목 중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의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으로서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입찰공고 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가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구례군은 ○○면 ○○○○○○ 관광지 일원의 관광인프라 개발을 위하여 2021. 00. 00.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평가는 동일 용역(관광단지 실시설계 용역 등 설계용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입찰 공고하였고, 2021. 00. 00. 최저가입찰 2순위¹⁾ 업체(○○○○○○(주))가 제출한 용역실적에 대하여 사업부서(문화관광실)의 실적확인을 거쳐 계약부서(재무과)에서 적격심사한 후 계약(금액 135,443,800 원)을 체결하였다.

또한 ○○○ ○○○○○○ ○○자리 조성을 위하여 2021. 00. 00.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평가는 동일 용역(동물사육시설 실시설계 용역 등 설계용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 ○○○○○○ ○○자리사업 실시설계 용역(이하 “○○○○○ ○ ○○자리사업 용역”이라 한다)을 입찰 공고하였고, 2021. 00. 00. 최저가입찰

1) 최저가입찰 1순위업체는 적격점수 미달로 후순위인 ○○○○○○(주)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1순위 업체((주)○○○○○사무소)가 제출한 용역실적에 대하여 사업부서(환경교통과)의 실적확인을 거쳐 계약부서(재무과)에서 적격심사한 후 계약(금액 172,425,800원)을 체결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기간 중(2022. 6. 21.~6. 29.) ○○지구 ○○○○○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 ○○○○○ ○○자리사업 실시설계 용역 적격심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평가는 동일 용역으로 제한하는 입찰공고에 반하여 부적정하게 적격심사를 실시한 사항이 확인되었고,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구 ○○○○○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구례군(문화관광실)은 2021. 00. 00. 입찰공고시 이행실적평가 제한사항인 동일 용역(관광단지 실시설계 용역 등 설계용역)에 대하여 ‘관광단지 실시설계 용역’의 ‘관광단지’는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 제2조 및 52조 등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으로 2021. 1월 기준 여수경도 해양 관광단지 등 전국 45개소로 한정되므로, 2021. 00월 적격심사 참가업체(○○○○○(주))가 제출한 [표 3]과 같은 ○○○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용역 등 4건의 실적은 동일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실적으로 인정하여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적격심사 평가 대상 용역실적으로 제출하였다.

[표 3] ○○○○○(주) 용역실적 부당 인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실적 인정금액	발주처
1	○○○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용역	2018.00.00.~2019.00.00.	88,279	○○○○
2	○○○○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2017.00.00.~2018.00.00.	50,652	전라남도 ○○군
3	2020년 ○○○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2019.00.00.~2020.00.00.	15,143	전라남도 ○○군
4	2020년 ○○○○○ ○○○○○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20.00.00.~2020.00.00.	16,223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사무소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재무과는 2021. 2월 ① 입찰공고문에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부서(문화관광실) 확인 후 제출하도록 명시하였고 ② 사업부서(문화관광실)에서 용역실적으로 인정하여 적격심사 시 제출된 건이라는 사유로 문화관광실이 용역실적으로 제출한 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항목인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 대상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 지표에 만점(10점)을 부여하여 ○○○○○(주)를 부당하게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표 4] “○○지구 ○○○○○ 조성사업 용역 적격심사 재산정 현황”과 같이 정당한 적격심사 결과대로라면 적격통과점수(95점) 미달(적격심사 점수 92점)로 낙찰자가 될 수 없는 ○○○○○(주)가 부당하게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차순위 최저가입찰업체가 적격심사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4] ○○지구 ○○○○○ 조성사업 용역 적격심사 재산정 현황

심사항목	배점	구례군 적격심사 점수	정당 평가시 점수
계	100	96	92
1. 수행능력	20	20	16
가. 이행실적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 대상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	10	10	6
나. 경영상태	10	10	10
2. 입찰가격	80	76	76
3. 기술인력	-10		
4. 계약질서 준수	-1.0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2) ○○○ ○○○○○ ○○자리사업 실시설계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구례군(환경교통과)은 2021. 00월 적격심사 참가업체((주)○○○○○사무소)가 제출한 [표 5]와 같이 곡성○○○○○○병원 증축공사 등 2건의 실적은 입찰공고시 이행실적평가 제한사항인 동일 용역(동물사육시설 실시설계 용역 등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실적으로 인정하여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적격심사 평가 대상 용역실적으로 제출하였다.

[표 5] ○○○○○○ ○○자리사업 용역 실적 인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실적인정금액	비고
1	·곡성○○○○○○○병원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72,289	동일 용역 미해당
2	·○○○○○ 소화효소 ○○○ ○○○ 보급 기반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592	동일 용역 미해당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재무과는 2021. 00월 ① 입찰공고문에 용역실적 인정 여부는 입찰공고 일 기준 사업부서(환경교통과) 확인 후 제출하도록 명시하였고 ② 사업부서(환경교통과)에서 용역실적으로 인정하여 적격심사 시 제출된 건이라는 사유로 환경교통과가 용역실적으로 제출한 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적격심사 수행 능력평가 항목인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 대상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 지표에 만점(10점) 중 9점을 부여하여 (주)○○○○○사무소를 부당하게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표 6]과 같이 정당한 적격심사 결과대로라면 적격통과점수(95점) 미달(적격심사 점수 92점)로 낙찰자가 될 수 없는 (주)○○○○○사무소가 부당하게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차순위 최저가입찰업체가 적격심사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6] ○○○○○○ ○○자리사업 용역 적격심사 재산정 현황

심사항목	배점	구례군 적격심사 점수	정당 평가시 점수
계	100	95.40	92
1. 수행능력	20	20	16
가. 이행실적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 대상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	10	9	6
나. 경영상태	10	10	10
2. 입찰가격	80	76.40	76
3. 기술인력	-10		
4. 계약질서 준수	-1.0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 ① 적격심사 당시 실적증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적격심사 통과 대상이 아닌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업무를 잘못 추진 한 지방○○주사 ○○○, 지방○○주사보 ○○○, 지방○○주사 ○○○, ○○주사보 ○○○, 지방○○주사보 ○○○를 “혼계”하고(혼계)
- ② 앞으로 용역 적격심사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연배상금 산정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재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불이행한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지연배상금 산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지연배상금률은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로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7절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그 지체일수마다 지연배상금률 1000분의 0.5(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를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재무과)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표]와 같이 “○○ ○○○○○길 조성사업” 등 2건의 지연배상금 산정 시 기성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기성금액을 제외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지연배상금을 총 2건에 7,831,265원을 과소 부과·징수하였다.

[표] 지연배상금 과소 부과·징수 현황(2019. 5월~2022. 5월)

(단위 : 원)

사업명	계약금액	준공기한	준공검사일	지연 일수	지연배상금		
					징수액 (A)	재산정액 (B)	과소 부과·징수액 (B-A)
2건	755,965,000				517,340	8,348,605	7,831,265
○○ ○○○ ○○○○길 조성사업	339,650,000	2019.09.02.	2019.10.04.	32	38,400	5,434,400	5,396,000
구례 ○○○ ○○ 조성 사업	416,315,000	2019.09.30.	2019.10.14.	14	478,940	2,914,205	2,435,265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계약해지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재무과)은 2020. 00. 00.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계약상대자인 (주)○○○○○○(대표 ○○○)이 경영난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2020. 00. 00. 계약은 해지하였으나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등 제재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계약 이행을 포기한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 향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앞으로 지연배상금이 과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포기한 업체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보건의료원)

내 용

1. 업무 개요

구례군은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등 결핵으로 생기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핵검진 및 결핵환자 등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방사선 위해(危害)방지를 위한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의료기관 등 종사자 결핵검진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기관의 종사자 및 교직원에게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와 제4조의2에 따르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할 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¹⁾과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²⁾는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할 기관의 장은 결핵감염 예방 및

1)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함

2)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함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결핵검진 등의 의무자가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자가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보건의료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결핵검진을 받아야 할 의료기관 등에서 [표 1]과 [별표 1] “결핵검진 명세”와 같이 2019년에 의료기관 7곳 등 8개소(52명), 2020년에 의료기관 8곳 등 11개소(51명), 2021년에 의료기관 9곳 등 14개소(44명) 등 총 33개소 147명이 결핵검진을 받지 않았는데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33백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결핵검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연도별 결핵검진 현황

(단위 : 개소, 명)

유형	대상 기관수	2019년 검진				2020년 검진				2021년 검진				관리 대장
		대상 인원	검진 인원	미검진		대상 인원	검진 인원	미검진		대상 인원	검진 인원	미검진		
				기관수	인원			기관수	인원			기관수	인원	
계	40	500	448	8	52	494	443	11	51	531	487	14	44	
의료기관	26	388	338	7	50	400	354	8	46	434	396	9	38	미비치
아동복지시설	7	19	19		-	22	20	1	2	23	22	1	1	미비치
어린이집	7	93	91	1	2	72	69	2	3	74	69	4	5	미비치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결핵환자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표 2]와 같이 ○○병원 소속 의료인 8명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았는데도 ○○병원장에게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결핵검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잠복결핵감염검진 현황

(단위 : 개소, 명)

유형	대상 기관수	2019년 잠복결핵감염검진				2020년 잠복결핵감염검진				2021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 인원	검진 인원	미검진		대상 인원	검진 인원	미검진		대상 인원	검진 인원	미검진	
				기관수	인원			기관수	인원			기관수	인원
의료기관	26	8	-	1 (○○병원)	8	8	-	1 (○○병원)	8	8	-	1 (○○병원)	8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결핵에 노출된 자가 적기 치료를 받지 않아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 및 이용자가 결핵 감염 위험에 노출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3. 방사선 발생장치 종사자 건강진단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의료법」 제37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³⁾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 발생장치 종사자가 2년마다 방사선 피폭증상 유무 등을 확인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보건의료원)은 2019. 5월부터 2022. 4월까지 [별표 2] “방사선 발생장치 종사자 건강검진 명세”와 같이 방사선 발생장치 종사자 총 21명 중 16명이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械)로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료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또한 2022. 5월 전남도로부터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를 받은 이후에야 의료기관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여 2022. 5. 31. 방사선 발생장치 종사자 15명이 검진을 완료하였으나, ○○병원 방사선 종사자 ○○○는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등 방사선 종사자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자인 의료기관 종사자의 피폭관리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군민이 방사선 감염 위험에 노출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앞으로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결핵검진 관리 및 방사선 발생장치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평생교육과)

내 용

1. 업무 개요

구례군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와 후원금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별표 4] 2. 개별기준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와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을 교체할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3차 위반 시 시설장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 후원금의 관리 나. 후원금의 관리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편에 따르면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

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 후원금의 관리 나. 후원금의 관리 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편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장이 후원금을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중 과목에 해당되어 과태료 300만원에 해당하는 처분대상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후원금을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1차 위반은 개선명령, 2·3차 위반은 시설장을 교체하는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평생교육과)은 ○○○○지역아동센터가 2021년 후원금을 ○○○○ 등 용도 외로 사용하였는데도 2022. 00. 00. [표 1]과 같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채 1차 위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개선명령만 처분하였다.

[표 1] 2022년 부적정 행정처분 현황

시설명 (센터장)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일
○○○○ 지역아동센터 (○○○)	1. 2021년 ○○○에게 ○○○ ○○○○ 통보 미이행	개선명령(1차)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	2022.00.00. (사전통지)
	2. ○○○후원금 중 일부 ○○○ 집행(재무회계규칙 위반)		2022.00.00. (처분통지)
	3. ○○하게 모금한 후원금 반환지시 이행 후 ○○계좌로 재모금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1. 00. 00. ○○○○지역아동센터는 교육프로그램 사업비를 군으로

부터 2,490천원을 지원받고 있는데도 같은 내용으로 학부모에게 후원금 1,560천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표 2]와 같이 ○○하게 모금한 후원금을 각 가정에 돌려주도록 한 행정지도 건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후원금을 낸 학부모에게 1,560천원을 돌려주어 행정지도 사항을 조치한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2021. 00. 00. ○○○○지역아동센터장 ○○계좌(농협)로 1,410천원을 되돌려 받고 2021. 00. 00. 다시 ○○○○지역아동센터 후원금계좌로 입금하여 부당하게 모금한 후원금을 돌려주도록 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지역아동센터 부당 후원금 행정처분 현황

시설명 (센터장)	지적사항	조치사항	처분기준	통보일
○○○○ 지역아동센터 (○○○)	교육프로그램 사업비로 2,490천원 지출, 같은 기간에 교육프로그램비 목적으로 ○○○○ ○○○에게 부당하게 후원금 총 1,560천원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후원금 관리 소홀	○○후원금 1,560천원을 각 가정에 돌려주도록 조치	행정지도	2021.00.00.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행정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후원금 관리·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연 1회 이상 시설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 후원금의 관리 나. 후원금의 관리 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편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

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르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지역아동센터가 제출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은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평생교육과)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표 3]과 같이 ○○○○아동센터 등 총 6개소가 제출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다.

[표 3]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인터넷 공개 현황

(2022. 5. 31. 기준)

시설명	센터장	인터넷 공개 여부
계	6개소	
○○○○아동센터	○○○	부
○○○○○ 지역아동센터	○○○	부
○○○○○아동센터	○○○	부
○○○○아동센터	○○○	부
○○○○○아동센터	○○○	부
○○○○지역아동센터	○○○	부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2021. 00. 00.부터 후원금에서 ○○○○ 및 ○○○○ 설치 공사를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계약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서류 없이 추진 한 후 2021. 00. 00. 견적서만 첨부하여 준공검사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 7,902천원을 집행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후원금 관리·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 ① 후원금 용도 위반 사용 건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시정)
- ②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후원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제출받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는 인터넷(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지역아동센터가 추진하는 공사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사회보장급여 지급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내 용

1. 업무 개요

구례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최저 생계비 이하인 세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생계·주거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 I. 급여의 개요 0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편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복지 급여 신청을 성실하게 하였음에도 보장기관이 반영을 누락하는 등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하며, 과다 지급된 급여는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주민복지과)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최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된 ○○○은 2019. 00. 00.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일이 속한 2019년 00월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00월분을 누락하고 2019년 00월부터 지급하는 등 [표 1]과 같이 총 8명에게 1,009,63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또한 ○○○에 대해서는 2022. 00. 00. 처음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면서 780,150원을 지급하여야 하였는데도 850,350원을 지급하는 등 70,2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1]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착오 지급 현황(2019. 5월~2022. 5월)

(단위 : 명, 원)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최초신청일	실제 지급		정당 지급 금액(b)	과소·과다 지급 (c=b-a)
				최초 지급일	금액(a)		
9명							과소 1,009,630 과다 70,200
생계급여	○○○	1900.00.00.	2019.00.00.	2019.00.00.	143,310	286,620	143,310
	○○○	1900.00.00	2020.00.00.	2020.00.00.	37,160	111,480	74,320
	○○○	1900.00.00	2019.00.00.	2019.00.00.	131,510	264,980	133,470
	○○○	1900.00.00	2020.00.00.	2020.00.00.	98,240	196,480	98,240
	○○○	1900.00.00	2021.00.00.	2021.00.00.	131,790	175,720	43,930
	○○○	1900.00.00	2021.00.00.	2021.00.00.	86,680	173,360	86,680
	○○○	1900.00.00	2021.00.00.	2022.00.00.	850,350	780,150	△ 70,200
주거급여	○○○	1900.00.00	2019.00.00.	2019.00.00.	66,670	333,350	266,680
	○○○	1900.00.00	2021.00.00.	2021.00.00.	163,000	326,000	163,000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에는 임차(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 안내」 제4편 주거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입원일을 기준으로 90일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임차급여를 제외하고, 90일이상 입원으로 인하여 주거급여 지급제외 사유가 발생한 달에 퇴원했어도 다음달 급여를 미지급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수급자의 주거실태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거급여 대상 가구원 전체가 3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한 경우에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주민복지과)은 2019. 5월부터 10월까지 [표 2]와 같이 1인 가구로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주거급여 대상자 ○○○에 대하여 중단 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3개월에 해당하는 271,200원의 주거급여를 과소하게 지급하였다.

[표 2]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과소 지급 현황(2019. 5월~10월)

(단위 : 명, 원)

대상자	생년월일	병원명	입원일	입원기간	퇴원일	과소 지급	
						개월	지급액
○○○	1971.00.00.	○○○병원	2019.00.00.	170	2019.00.00.	3	271,200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사망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 편에 따르면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를 실제로 실시하는 사람에게 1가구당 800천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으려

는 사람은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제를 책임진 자가 장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장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주민복지과)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가 2020. 00. 00. 사망하였으나 장례를 책임진 자가 미신청하였다는 사유로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표 3]과 같이 실제 장례를 책임진 총 7명에게 5,600천원의 장제급여 신청에 대한 안내·홍보를 소홀히 하여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표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현황(2019. 5월~2022. 5월)

(단위 : 원)

대상자	생년월일	사망일	사망신고일	미지급	
				금액	사유
계		7명		5,600,000	
○○○	1900.00.00.	2020.00.00.	2020.00.00.	800,000	미신청
○○○	1900.00.00.	2020.00.00.	2020.00.00.	800,000	미신청
○○○	1900.00.00.	2020.00.00.	2020.00.00.	800,000	미신청
○○○	1900.00.00.	2021.00.00.	2021.00.00.	800,000	미신청
○○○	1900.00.00.	2021.00.00.	2021.00.00.	800,000	미신청
○○○	1900.00.00.	2021.00.00.	2022.00.00.	800,000	미신청
○○○	1900.00.00.	2022.00.00.	2022.00.00.	800,000	미신청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미수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호1)의

1) 제22조제1항제1호,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제2호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연간 조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1월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급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급자 조사 업무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주민복지과)은 2020년부터 2022. 5월까지 [표 4]와 같이 2020년에는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았고, 2022년도는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한을 초과하여 수립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 현황(2020~2022. 5월)

연도	연간조사계획 수립 여부(수립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여부
2020년	부	부
2021년	여	2021.01.28.
2022년	여	2022.03.15.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복지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지 못하여 수급자의 권리구제가 소홀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 될 우려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제3호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4호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 ① 수급자 15명에게 과소 및 미지급된 생계·장제급여 6,880,830원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1명에 대하여 70,200원을 회수하며(시정)
- ②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 수급자 관리 및 급여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구례군○○회 보조금 지원·관리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스포츠산업과)

훈 계 대 상 자 ① 구례군 ○○○○과 지방○○주사보 ○○○

② 구례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 개요

구례군은 2019. 5월부터 2021년까지 군 ○○발전과 군민의 ○○활동을 장려하고 군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례군○○회에 4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지방○○주사보 ○○○은 2018.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 보조금 지원, 군 ○○회 회계담당자 등 재정보증보험 가입 관리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21. 00. 00.부터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 보조금 지원, 군 ○○회 회계담당자 등 재정보증보험 가입 관리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 보조금 지원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1)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인건비, 사무관리, 임차료 등과 같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원에 관한 해석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3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운영비는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 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되고,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V.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편에 따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려면 「지방재정법」 등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스포츠산업과)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표 1]와과 같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 86,400,000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고, 구례군○○회에서 65,216,080원을 운영비와는 별도의 수당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도록 이를 방치하였다.

1) 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삭제 → 2021. 7. 13. 시행)되기 전의 것

[표 1]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 보조금 지급 현황(2019. 5월~2022. 5월)

(단위 : 원)

계	2019. 5~12월	2020	2021	2022. 1~5월	비고
65,216,080	13,819,260	20,796,820	21,600,000	9,000,000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군○○회 사무국장 수당 65,216,080원이 보조금으로 부적정하게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 예산편성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및 제3항²⁾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6조 제2항 및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3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Ⅲ.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의 실무검토를 거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한 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구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4항³⁾에 따르

2) 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삭제 → 2021. 7. 13. 시행)되기 전의 것

3) 2022. 4. 8 조례 제2452호로 전부개정(2022. 4. 8. 시행)되기 전의 것

면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지방보조금으로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려면 「지방재정법」 등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기획예산실)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표 2]와 같이 사업부서(스포츠산업과)의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 지원 보조금의 예산편성 요구에 대하여 실무검토없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사무국장 수당 86,400,000원을 지방보조금으로 부적정하게 편성하였다.

[표 2]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 보조금 심의 현황(2019. 5월~2022. 5월)

(단위 : 원)

심의일	사업명	신청액	조정 및 편성액	비고(사유)
계		96,000,000	86,400,000	
2018.00.00.	2019년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 지원 (민간경상보조)	24,000,000	21,600,000	○○회 사무국장 업무추진을 위한 수당 일부 지원
2019.00.00.	2020년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 지원 (민간경상보조)	24,000,000	21,600,000	
2020.00.00.	2021년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 지원 (민간경상보조)	24,000,000	21,600,000	
2021.00.00.	2021년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 지원 (민간경상보조)	24,000,000	21,600,000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법령에 교부할 수 없는 수당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구례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 조직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이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경로우대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사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구례군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체육동호인 및 관내기관·단체·기업체가 사용할 때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신청을 하였을 때는 「구례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와 동시에 적법한 사용료를 납부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스포츠산업과)은 2021. 7월부터 2021. 12월까지 체육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전용사

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는데도 [별표 1] “체육시설 사용허가 부적정 명세”와 같이 ○○○○○ 하계축구 전지훈련 등 54건, 52,040천원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세외수입금 52,040천원이 지방재정으로 확보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5.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이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등 그 밖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을 말하며,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구례군○○회에 지원된 보조금의 세입·세출 등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책임한계를 확보하기 위해 회계관직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재무관, 지출원 등 회계관직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재정보증을 가입한 후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스포츠산업과)은 2019. 5월부터 2021년까지 [표 3]과 같이 구례군○○회가 회계관직(경리관, 분임경리관, 지출원)을 지정하지 않고 회계담당자의 재정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보조금 4,812,173천원 집행하고 있는데도 아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3] 구례군○○회 사무국 회계관직 미지정 및 재정보증 미가입 현황(2019. 5월~2021년)

명칭	직급(직위)	성명	담당업무	회계관직	재정보증 가입여부	보조금 지원 (2019~2021)
구례군 ○○회	회장	○○○	총괄	-	부	4,812,173천원
	사무국장	○○○	지도자관리 및 업무총괄	-	부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회계관직을 지정받지 않은 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계사고 발생 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 ①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을 부당하게 지원한 지방○○주사보 ○○○, 지방○○주사 ○○○를 훈계하고(훈계)
- ②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 집행잔액 12,600,000원에 대한 군 세입처리 및 구례군○○회에 대하여 회계관직을 지정한 후 회계담당자를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시정)
- ③ 앞으로 구례군○○회 사무국장 수당 부당 예산편성 및 체육시설 사용료 부당 면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주요요구

제 목 농기계 지원사업 등 민간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구례군은 2019. 5월부터 2021년까지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위주의 지역 농업 여건을 고려한 소형농기계 지원, 안전관리 실천사업,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2.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제5항 및 제76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이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되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매년 현지출장 등의 확

인을 통하여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와 무단 매각·양도·처분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은 2019. 5월부터 2021년까지 [표 1]과 같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과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으로 447개 농가와 2개 단체에 총 494대의 농기계를 지원하고도 현장확인 등을 통한 실태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

[표 1] 각종 농기계 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2019. 5월~20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부서명)	연도	보조사업자	농기계 지원 현황		사후 관리대장 비치	사후관리 여부	
			기종수	사업비		출장복명	현장사진
계		447명/2개 단체	494대	1,320,019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친환경농정과)	계	447명	447대	1,278,719			
	2019	149명	관리기 등 149	410,148	여	부	부
	2020	118명	동력운반차 등 118	350,154	여	부	부
	2021	180명	동력경운기 등 180	518,417	여	부	부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농업기술센터)	계	2개 단체	47대	41,300			
	2019	○○○○○회	논두렁조성기 등 13대	20,900	부	부	부
	2020	○○한마음 ○○○○○회	동력운반차 등 34대	20,400	부	부	부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 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 등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하고,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되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 사업 지침」에 따르면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고 준공 이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설치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등의 입구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지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친환경농정과)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8개 농가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의 부착 여부와 고추 재배시기(5~8월)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2022. 6. 21.~6. 29.) 중 현장을 확인한 결과, [표 2] 및 [사진]과 같이 2019년에 1개동, 2021년에 2개동 등 총 3개동의 시설에서 고추 외의 작목을 재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대상자 및 사후관리 현황(2019~2021년)

(단위 : m², 천원)

연도	보조사업자	사업량	사업비	사후관리 여부		현재 이용실태
				출장복명	현장사진	
계	18명	14,258	300,960			타 작물 혼식 3동
2019	○○○ 등 3명	4,318 (4동)	85,800	부	부	타 작물 혼식 1동 (오이, 호박 등 식재)
2020	-	-	-	-	-	미지원
2021	○○○ 등 15명	9,940 (15동)	215,160	부	부	타 작물 혼식 2동 (수박, 토마토 등 식재)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 타작물 혼식 재배 현장 확인 현황(2019~2021년)

		
호박, 오이 재배 시설 현장	토마토, 양배추 등 재배 현장	수박 재배 현장

자료 : 구례군 현장 확인 결과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고추 비가림 시설 준공 이후 5년간 건고추 재배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관리를 하지 않아 목적사업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앞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농기계와 고추비가림 재배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비치 및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매년 1회 이상 현지출장 등을 통한 점검으로 당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도로점용료 등 미부과 및 옥외광고물 사후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안전도시과)

훈 계 대 상 자 구례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2022. 5월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42개소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0. 5월 이전부터 2022. 5월까지 786개의 고정광고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1. 00. 00.부터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게첩 시 도로점용료 및 허가 수수료 부과 업무 담당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게첩 시 도로점용료 및 수수료 미부과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¹⁾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례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군수는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현수막(그 밖의 용도) 표시면적 1㎡ 단위, 점용기간 1일 단위의 점용료는 150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도로법」 제10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 금액은 1천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구례군 옥외광고 조례에서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

따라서 구례군은 현수막 지정제시대에 현수막 게첩을 허가한 자에 대하여 현수막 1개당 7,700원²⁾($\approx 6.75\text{m} \times 0.7\text{m} \times 150\text{원} \times 10\text{일} \times 1.1$)의 도로점용료와 건당 1천원의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고 이를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1.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2) 제시대 현수막 게첩 크기 가로 6.75m, 세로 0.7m, 평균 게첩 허가기간 10일에 부가가치세(10%)를 반영한 금액

그런데 구례군(안전도시과)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의 현수막 게재 신청 1,825건에 대하여 [표]와 같이 도로점용료 14,052천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1,825천원(1,825건 × 1천원)도 부과하지
 않았다.

[표]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로점용료 및 허가 수수료 미부과 현황(2019. 5월~2022. 5월)

(단위 : 건, 원)

연도	신청 건수	도로점용료 미부과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미부과
		계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계	1,825	14,052,500	12,775,000	1,277,500	1,825,000
2019.05.~2019.12.	389	2,995,300	2,723,000	272,300	389,000
2020	518	3,988,600	3,626,000	362,600	518,000
2021	657	5,058,900	4,599,000	459,900	657,000
2022.01.~2022.05.	261	2,009,700	1,827,000	182,700	261,000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도로점용료 14,052천원과 도로점용료 허가 수수료 1,825천원 등
 총 15,877천원이 세외수입으로 확충되는 기회가 상실되었다.

3. 옥외광고물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허가
 등을 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
 내에 시장·군수에게 연장허가 등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따르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광
 고물 관리자 등에게 해당 광고물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조치기간 내
 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표시기간 연장 신청 대상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표시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관리자 등에게는 시정명령을 하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안전도시과)는 2022. 6. 29. 감사일 현재 [별표] “구례군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표시기간이 만료된 68건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종료를 안내하였는데도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관리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절차 등을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 ①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 허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신청하지 않은 관리자에게 시정명령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며(**시정**)
- ③ 앞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게첩을 허가할 경우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 허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도로·하천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 사용 협의 없이 무단 훼손

관계기관(부서) 구례군(건설과)

훈 계 대 상 자 구례군 건설과 지방○○사무관 ○○○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도로 선형 불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집중호우 시 하천 주변의 농경지, 가옥 등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표 1]과 같이 8건의 도로 및 하천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표 1] 도로·하천공사 추진 현황(2019. 5월~2022. 5월)

계	도 로		하 천	
	사업내용	건수	사업내용	건수
군도4호선 선형개량사업 등 8건	선형개량 등	1	지방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7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사무관 ○○○은 2020. 00. 00.부터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과에서 도로·하천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 사용 협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

친 인·허가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도로법」 제38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¹⁾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²⁾을 듣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이 도로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무상귀속에 대한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고, 의견 협의가 완료된 이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건설과)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선형 불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0호선 선형개량” 도로 사업 1건과 집중호우 시 하천 주변의 농토, 가옥 등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천 하천재해 예방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함(도로·공원·철도·수도 등)

2)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은 국토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봄

업” 등 6건의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2]와 같이 국·공유지 105필지 138,849㎡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³⁾과의 사전 무상귀속에 대한 의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도로 및 하천공사를 시행하여 2022. 6. 29. 감사일 현재 [별표] “도로 및 하천공사 구간 내 편입 국·공유지 미협의 세부 명세”와 같이 최소 4개월에서 최대 5년 11개월 동안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

[표 2] 공사 구간 내 편입 국·공유지 관리청 사전 의견청취 미진행 현황

(단위 : 필지, ㎡)

계		기재부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기타 (전남도 등)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105	138,849	1	13	52	132,313	31	5,761	-	-	21	762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국·공유재산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 ① 도로·하천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 사용 협의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과장 지방○○사무관 ○○○을 훈계하고(훈계)
- ② 무단 사용 중인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등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건설엔지니어링 공동계약 계열회사 간 참여 제한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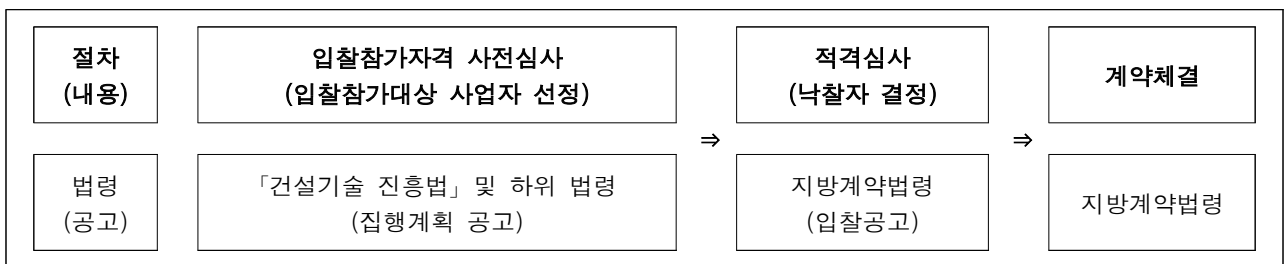
훈 계 대 상 자 구례군 ○○면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2.1억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¹⁾ 11건을 [그림]과 같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²⁾를 통하여 입찰참가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 해당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절차



자료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내용 재구성

지방○○주사 ○○○는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
○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입찰공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7939호, '21. 3. 16.)으로 "건설기술용역"의 용어를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

2) PQ(Pre-Qualification) 부실 공사(용역)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전에 미리 공사(용역) 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2.1억원 이상

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³⁾으로 인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명시(최소 40%, 최대 49%)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등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를 공사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 계열회사의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사항은 제외)하는 방법으

3)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동계약과 관련한 지역업체 지원제도로써 공사현장에 소재한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도록 하는 제도(감사원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81페이지)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별표] “건설엔지니어링 공동계약 계열사 참여 제한 부적정 세부 명세”와 같이 공사계약이 아닌 “구례군 ○○○○처리시설 증설공사 외 1건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 5건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위한 집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참가자격 중 “공동도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간 구성은 불가”하다고 명기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그로 인하여 5건의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과 관련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입찰 공고를 하면서 공동도급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과도하게 제한한 지방○○주사 ○○○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건설과)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섬진강 주변 항구 복구와 자연재해 재피해 예방을 위하여 2021. 11월부터 2022. 5월 까지 [표 1]과 같이 14건의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추진 현황(2021. 11월~2022. 5월)

(단위 : 억원)

구례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사업 건수	사 업 비			사업기간	도급회사	감리회사
		계	도급	관급 등			
계	14	1,320	627	693	2021.11.10.~ 2023.08.18.	14개 회사	11개 회사
배수펌프장 (월평, 죽연, 구성)	3	442	170	272	2021.12.28.~ 2023.06.20.	(주)○○종합건설 등 3개 회사	(주)○○ 등 4개 회사
배수펌프장 (냉천, 사도, 안촌, 봉소)	4	500	219	281	2021.12.28.~ 2023.06.20.	○○건설(주) 등 4개 회사	(주)○○ 등 3개 회사
지방하천 (서시천1·2지구, 백연천)	3	206	143	63	2022.01.13.~ 2023.08.18.	(유)○○○○건설 등 3개 회사	(주)○○ 엔지니어링 등 2개 회사
소하천 (봉서, 죽연, 구성, 전천)	4	172	95	77	2021.11.10.~ 2022.12.27.	○○○○건설(주) 등 4개 회사	(주)○○ 엔지니어링 등 2개 회사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간접공사비(기타경비) 제비율 과다 계상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비목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제1관 통칙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다 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재료량, 노무량, 소요량)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은 조달청에서 매년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고시하고 있는 ‘토목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제작한 ‘전라남도 설계·시공 편람’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대하여 제비율을 적용 중이며,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에 따라 시행하는 전라남도 계약심사 시에도 같은 제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대하여 간접공사비인 제비율 중 기타 경비 요율을 적용할 때에는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전라남도 설계·시공 편람’ 상의 요율¹⁾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건설과)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추진한 다른 건설사업은 ‘전라남도 설계·시공 편람’에 따라 제비율을 적용하면서 2021. 11월부터

1) 기타경비 요율 적용기준 : (공사종류+공사규모+공사기간) ÷ 3

2022. 5월까지 추진한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중 12건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기타경비 요율을 과다하게 잘못 적용하여 1,097,727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2]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기타경비 비율 과다 적용 현황(2021. 11월~2022. 5월)

(단위 : %, 천원)

연번	사업명	당 초		편람상 비율 반영		감액 금액 (B-A)
		요율	금액(A)	요율	금액(B)	
계	12건	-	52,434,498	-	51,336,771	△1,097,727
1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 ○○펌프장)사업	10.00	4,128,513	5.84	3,999,200	△129,313
2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 ○○펌프장)사업	10.00	4,645,069	5.84	4,501,023	△144,046
3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 ○○펌프장)사업	10.00	8,080,942	5.84	7,823,070	△257,872
4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 ○○펌프장)사업	10.00	3,956,120	5.84	3,822,350	△133,770
5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 ○○펌프장)사업	10.00	4,005,294	5.84	3,880,800	△124,494
6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 ○○펌프장)사업	7.62	7,573,267	5.84	7,471,629	△101,638
7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 ○○펌프장)사업	9.70	5,995,811	5.84	5,821,506	△174,305
8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5.17	4,512,032	5.84	4,535,960	23,928
9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5.36	2,702,394	4.61	2,686,046	△16,348
10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5.36	2,533,139	4.61	2,518,470	△14,669
11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5.36	2,090,183	4.61	2,077,982	△12,201
12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 및 ○○○○○)사업	5.36	2,211,734	4.61	2,198,735	△12,999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해 공사비에 기타경비 1,097,727천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3. 건설공사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계상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별표 6] 2. 품질관리비 나. 품질관리활동비 편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품질관리활동비²⁾ 중 시험관리인³⁾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초급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는 품질관리활동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건설과)은 2021. 11월부터 2022. 5월까지 추진한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중 7개 사업에 대하여 [표 3]과 같이 초급 품질관리기술인의 인건비가 불필요하게 품질관리활동비에 반영되어 489,663천원의 감액이 필요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3]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계상 현황(2021. 11월~2022. 5월)

(단위 : 명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초급 품질관리기술인	
		참여인원	인건비 (불필요한 품질관리활동비 반영액)
계	7건	7명	489,663
1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 ○○펌프장) 사업	1	75,390
2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 ○○펌프장)사업	1	76,090
3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 ○○펌프장)사업	1	76,260
4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 ○○펌프장)사업	1	74,609
5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 ○○펌프장)사업	1	70,906
6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1	60,913
7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2지구)사업	1	55,495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2)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

3)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초급 품질관리기술인)

그로 인하여 품질관리활동비 489,663천원이 공사비에 과다 계상되어 예산을 낭비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4. 공사비 과다 계상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건설과)은 2021. 11월부터 2022. 5월까지 추진한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중 5개 사업에 대하여 [표 4]와 같이 안전관리비 등이 불필요하게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226,925천원의 감액이 필요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4]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공사비 과다 계상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공 종	당초 내역		정당한 내역		감액 금액 (B-A)	비 고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5개			692,098		465,173	△226,925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 (○○○1지구)사업	소계		607,955		414,180	△193,775	
	안전관리비	1식	205,915	1식	127,565	△78,350	
	호안공	27,347㎡	402,040	27,347㎡	286,615	△115,425	블록붙이기 단가 ㎡당 10,574원 → 9,575원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 (○○○2지구)사업	호안공	2,435㎡	48,784	2,435㎡	40,301	△8,483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 (○○○)사업	호안공	739㎡	13,299	739㎡	10,692	△2,607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 (○○○○○)사업	안전관리비	1식	11,038	1식	-	△11,038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 (○○ 및 ○○○○○)사업	안전관리비	1식	11,022	1식	-	△11,022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안전관리비 및 호안블록붙이기 단가의 과다반영 등으로 226,925천원이 공사비에 과다 계상되어 예산을 낭비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간접공사비(기타경비)와 품질관리활동비, 호안공 등 공사비에 대하여 1,814,315,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개선요구

제 목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종합민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2021. 7. 9.부터 2022. 5월까지 「건축법」 및 「구례군 건축 조례」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례군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총 43회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표 1] 구례군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현황(2021. 7. 9.~2022. 5월)

(단위 : 회)

구분	계	2021. 7. 9.~2021. 12. 31.	2022. 1. 1.~2022. 5. 31.
계	43	27	16
사용승인	42	27	15
임시사용승인	1	-	1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27조에 따르면 허가권자¹⁾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해당 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또한 2021. 1. 8. 개정(시행일 2021. 7. 9.)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하되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권자는 위의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건축개발과)는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공고하여 총 332명의 명부를 작성하고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는 해당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지정하도록 허가권자에게 안내 공문을 3차례³⁾ 발송하였다.

따라서 구례군은 2021. 7. 9.부터는 전라남도가 모집공고하여 명부에 등록한 건축사 중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종합민원과)은 2021. 7. 9.부터 2022. 5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전라남도가 작성·관리 중인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위배된 「구례군 건축 조례」 제21조 제3항을 근거로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 협회와 협의하여 정한 건축사 5명이 [표 2]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행하도록 하였다.

[표 2] 구례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위반 현황(2021. 7. 9.~2022. 5월)

(단위: 회)

연번	전라남도 작성·관리 목록 외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건축사사무소 명	건축사	계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계	5개소		13	12	1
1	○○건축사사무소	○○○	7	7	
2	건축사사무소 ○○○	○○○	1		1
3	○○ 건축사사무소	○○○	1	1	
4	○○건축사사무소	○○○	2	2	
5	(주)○○○○○건축사사무소	○○○	2	2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건축개발과-00000(2021.00.00.), 건축개발과-00000(2021.00.00.), 건축개발과-00000(2021.00.00.)

그로 인하여 건축 법령에 위반된 업무대행건축사가 건축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구례군 건축행정의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구례군 건축 조례」 제21조 제3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앞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법령상 개선)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협의 등 문화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

훈계대상자 구례군 ○○○○○○○○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346건을 발주하여 준공 또는 공사 중에 있다.

지방○○주사보 ○○○은 2017. 00. 00.부터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에서 ○○○○ 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와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¹⁾으로 지정하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그 안에서 건설공사²⁾를 시행할 때에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부서와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19. 1월부터 12월까지 “○○○○ 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대상지가 국가민속문화재(구례 ○○○○○)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50m)인데도 [표]와 같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협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미이행 건설공사 현황(2019년)

(단위 : m)

연번	문화재명	사업명	위치	문화재 이격거리	사업추진부서
1	구례 ○○○ ○○ (국가민속문화재)	○○○○ 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	○○면 ○○리 000	50	상하수도 사업소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문화재 보존영향 검토·협의 대상 지역)

가) 국가 지정 문화재

- 주거·상업·공업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까지의 지역

나) 도 지정 문화재

- 주거·상업·공업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m까지의 지역

2)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지정문화재·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수목 식재·제거 공사,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 연안해역)의 원형변경(땅깎기, 다시 메우기, 땅파기,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 수몰, 매립 등)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협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시행한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등 수도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

훈 계 대 상 자 ① 구례군 ○○과 지방○○서기 ○○○

② 구례군 ○○○○○○○○ 지방○○주사 ○○○

③ 구례군 ○○○○실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도법」에 따라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및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과 일반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서기 ○○○은 2019.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지방○○주사 ○○○는 2021.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에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갱신)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또한 지방○○주사 ○○○은 2017. 00. 00.부터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에서 일반수도 정비사업 시·도지사 변경인가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수도법」 제21조 제6항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¹⁾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업무²⁾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명시된 실무경력 등의 자격³⁾을 충족한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관리청은 수도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부는 계속되는 수도사고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시설 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수도시설관리자가 임명되도록 2020. 8월 임명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⁴⁾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구례군은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경력 등의 자격을 충족한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22. 00. 00. ○○○○○○○장 ○○○은 수도시설관리자⁵⁾의 실무경력이 3년 2개월에 불과하여 자격요건에 1년 10개월이 부족한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⁶⁾하였다.

그로 인하여 수도사고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업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여 책임감 있는 수도 관리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부적정

-
- 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
 - 2) 수도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 업무
 - 3) 전문대학에서 위생학과 등 7개 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수도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
 - 4) 환경부 물이용기획과-0000(2020. 00. 00.) :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여부 및 행정처분 계획 알림
전라남도 물환경과-00000(2018. 00. 00.) :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여부 및 행정처분 계획 알림
 - 5) ○○○ : ○○대학 ○○학과 졸업 후 수도에 관한 실무를 3년 2개월 종사(실무 5년 이상 시 충족)
 - 6) 상하수도사업소-000(2022. 00. 00.) : 주무관 ○○○, 팀장 ○○○, 소장 ○○○, 부군수 ○○○, 군수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구례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하되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례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법인의 경우 시공기술자 3인 이상 보유하는 등 지정기준 요건⁷⁾을 갖추고 지정서류⁸⁾를 제출하여 군수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시공기술자는 「구례군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상수도 기술업무 2년 이상 종사자 중 배관기능사(위생 분야) 2급 이상 자격취득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 공사면허 소지자, 「건설산업기본법」에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 범위에서 정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이 인정된 자,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급수공사 대행업을 허가(갱신)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출한 지정서류를 대행업자 지정기준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19. 8. 9.과 2021. 8. 19. [표 1]과 같이 관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4곳 중에 하나인 (주)○○건설의 경우 시공기술자 3명 중 1명이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급수공사 대행업 자격 충족에 미달인데도 허가(갱신) 통보⁹⁾하였다.

7) (기술능력) 법인 : 시공기술자 3인 이상 보유, 개인 : 시공기술자 2인 이상 보유

(자본금) 법인 : 5,000만원 이상, 개인 : 재산평가액 2,500만원 이상

(영업시설) 사무실 : 구례군 관할 구역 내 소재하고 면적 10㎡ 이상 / 창고 : 구례군 관할 구역 내 소재하고 면적 100㎡ 이상 / 전화 : 유선전화, 인터넷 전화 등 가입 전화 1대 이상

(공사용 장비) 화물차 1대 이상, 급수관 분기 공구 1세트 이상, 도로 컷터기 1대 이상, 진동로울러 1대 이상, 다짐기 1대 이상, 수중모터 및 양수기 1대 이상, 백호우 1대 이상, 공사용 안전용구 등

8) 1. 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 2. 사업자 명의 차량등록원부 3. 경력증명서 4. 사무실·창고 소재지 증명서 5. 상수도 공사 실적증명서 6. 종업원 신고서 7. 공사용 기계 기구 보유명세서 8. 시공기술자 합격증서 사본 9. 영업자본명세, 10.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11. 상근인력 사실확인증명서류

[표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기술능력 현황

연번	법인 / 개인	업 체 명 (대표자)	기술능력 조건	신청서 내 기술능력	적정 여·부
계		4개 업체			
1	법인	○○건설(주) (○○○)	시공기술자 3인 이상	토목고급 1명, 토목초급 1명, 건축배관기능사 1명	적정
2	법인	(주)○○건설 (○○○)	시공기술자 3인 이상	토목초급 2명, 굴삭기운전기능사 1명(부적정)	부적정
3	법인	(주)○○건설 (○○○)	시공기술자 3인 이상	토목초급 2명, 건축초급 1명	적정
4	개인	○○○○설비 (○○○)	시공기술자 2인 이상	건축배관기능사 2명	적정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별표] “미자격 급수공사 대행업자 공사 수주 현황”과 같이 부적격한 업체가 2019. 10월부터 2022. 4월까지 총 84건의 급수공사(265,565천원)를 수주하는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일반수도 설치에 따른 시·도지사 변경인가 절차 등 미이행

가. 시·도지사 변경인가 절차 미이행

(1) 관계법령(판단기준)

「수도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일반수도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로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 후 인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도시설 확충 개량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환경부)」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¹⁰⁾의 교부 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에 대해 유역환경청 검토를 거쳐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일반수도 사업을 추진 중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상 증가

9) 상하수도사업소-0000(2019. 00. 00.) : 주무관 ○○○, 팀장 ○○○, 소장 ○○○
상하수도사업소-00000(2021. 00. 00.) : 주무관 ○○○, 팀장 ○○○, 소장 ○○○

10) 전라남도 환경정책담당관-0000(2014. 00. 00.) 「2014년 상수도예산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하거나 감소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 협의 후 시·도지사 인가를 이행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 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15. 6월부터 2020. 12월까지 추진한 ○○○ 지방 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의 경우 [표 2]와 같이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상이 증가¹¹⁾하였는데도 환경부 협의 및 시·도지사 변경인가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변경내용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2] 일반수도 사업 시·도지사 변경인가 절차 미이행 현황

사 업 명	사 업 량(시설용량, km)			사업기간
	당 초	변 경	증 액(증감율)	
○○○○ 지방 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	45.5	56.6	증 11.1(24.4%)	2015.00.00.~2020.00.00.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일반수도 국고 보조금을 사업 내용과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등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하였다.

나. 설계변경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 발생, 불필요한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11) 최초 10분의 1 증가 시 담당자 : ○○○ 주무관

따라서 구례군은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공사가 아니면 당초 계약상대자와 변경계약으로 추진하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15. 00월부터 2020. 00월까지 추진한 “○○○○ 지방 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에서 주민들의 상수도 추가 요청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설계 구역 내 13개 마을의 신규가옥 175가구¹²⁾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수관로 11.1km(공사비 408,834천원)를 설계변경하면서 이는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아니므로 별도 사업으로 일반경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기존 계약자인 ○○○○(주)(대표이사 ○○○)와 부당하게 변경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여 추가한 13개 마을 175가구의 상수관로 공사에 동종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 일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12) ○○○○ 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 : ○○, ○○, ○○ 등 13개 마을 / 11.100km / 408,834천원

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21. 1월부터 2022. 11월까지 [표 3]과 같이 추진 중인 2개의 일반수도 사업에서 감액이 필요한데도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 조치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 일반수도사업 추진 현황(2021. 1월~2022. 11월)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 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계	2건		21,133	13,039	8,094			
1	구례군 ○○○○○ 정비사업	구례○○○○○ (Q=7,900톤/일)	16,502	9,610	6,892	2021.00.00. ~2023.00.00.	(주)○○ (○○○)	감액
2	구례○○○ 및 ○○○ ○○○ 재해복구사업	○○○ ○○○ (Q=2,100m³/일)	4,631	3,429	1,202	2021.00.00.~ 2022.00.00.	○○건설 그룹(주) (○○○)	감액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1) 구례군 ○○○○○ 정비사업

① 현장 내 보관 중인 관급자재 관리를 위한 불필요한 보통인부 인건비 30개월을 반영하여 공사비 9,077천원을 감액하여야 하고 ② ○○ 및 ○○ 송수관로 설치 시 반영된 사토 및 토공, 되메우기, 모래, 보조기층, 폐기물 운반 거리 미 정산으로 공사비 27,599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총사업비 36,676천원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2) 구례○○○ 및 ○○○ ○○○ 재해복구사업

① 원활한 자재 구매와 예산 절감을 위해 부대공에 반영된 모래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여 공사비 16,635천원(도금액 감 203,132, 관급자재 증 186,497)을 감액하여야 하고 ②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사토 및 순성토 운반량이 10,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사토 및 순성토 운반량 6,694m³인 사업에 축중기 설치 및 해체비를 반영하여 3,163천원의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총사업비 19,798천원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 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갱신)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서기 ○○○과 지방○○주사 ○○○ 및 일반수도 정비사업 시·도지사 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수도시설관리자는 실무경력 등 자격이 충족한 자로 임명하며, 추진 중인 2개의 일반수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56,474,000원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하수도 설치에 따른 시·도지사 변경인가 절차 등 미이행

관계기관(부서)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

훈 계 대 상 자 구례군 ○○○○○○○○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표 1]과 같이 하수도 정비 및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하수도 정비 및 재해복구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계	4건		36,994	13,309	23,685			
1	○○ 하수관로 정비사업	L=5.6km	4,352	3,280	1,072	2016.00.00. ~2020.00.00.	(주)○○○○ (○○○)	변경 인가
2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L=0.4km Q=75m³/일	1,234	742	492	2020.00.00. ~2021.00.00.	(주)○○ (○○○)	변경 인가
3	구례 ○○○○○○ 재해복구사업	재해복구 1식	20,716	5,637	15,079	2021.00.00. ~2022.00.00.	○○○종합건설(주) (○○○)	감액
4	구례 ○○, ○○○○ 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재해복구 1식	10,692	3,650	7,042	2021.00.00. ~2022.00.00.	○○건설(주) (○○○)	감액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 ○○○는 2019. 00. 00.부터 2022. 6. 29. 감사일 현재까지 ○○○○○에서 하수도 정비사업 시·도지사 변경인가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로 근무하고 있다.

2. 하수도 설치에 따른 시·도지사 변경인가 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아닌 경우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시설면적, 하수관로의 길이 등이 10%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와 사업 시행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중 하수관로의 길이가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전라남도지사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16. 5월부터 2021. 12월까지 추진한 “○○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의 하수관로 길이가 10% 이상 증감¹⁾하였는데도 전라남도지사의 변경인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 하수도 정비사업 시·도지사 변경인가 절차 미이행 현황(2016. 5월~2021. 12월)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시설용량, km)			사업기간
		당 초	변 경	증 액(증감율)	
1	○○ 하수관로 정비사업	5.66	5.05	감 0.61(10.8%)	2016.00.00.~2020.00.00.
2	○○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0.46	1.02	증 0.56(121.7%)	2020.00.00.~2021.00.00.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해 하수도 국고 보조금을 사업 내용과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등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하였다.

1) 최초 10퍼센트 증·감 시 담당자 : (○○, ○○지구) 주무관 ○○○

3.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21. 12월부터 2022. 12월까지 추진 중인 2개의 재해복구사업에서 감액이 필요한데도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 조치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례 ○○○○○○ 재해복구사업

① 안전관리비 검토비용 실비 미정산으로 6,286천원을 감액하여야 하고 ②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불필요로 3,352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총사업비 9,638천원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2) 구례 ○○, ○○○○ 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① 안전관리비 검토비용 실비 미정산으로 15,077천원을 감액하여야 하고 ②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불필요로 2,890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며 ③ 토공사 되메우기 시 콤팩터 다짐장비 미사용으로 실제로 사용한 1톤 롤러로 변경이 필요하여 2,465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총사업비 20,432천원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4.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비 과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별표 6] 2. 품질관리비 나. 품질관리활동비 편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품질관리활동비²⁾ 중 시험관리인³⁾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초급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는 품질관리활동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21. 12월부터 2022. 12월까지 추진 중인 구례 ○○○○○○ 재해복구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초급 품질관리기술인의 인건비를 불필요하게 품질관리활동비에 반영하여 85,551천원의 감액이 필요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3)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초급 품질관리기술인)

[표 2] 구례 재해복구사업 품질관리활동비 계상 현황(2021. 12월~2022. 5월)

(단위 : 원 / 명)

사 업 비	초급 품질관리기술인	
	참여인원	인건비 (불필요한 품질관리활동비 반영액)
계	2명	85,551
구례 ○○○○○○ 재해복구사업	1	45,698
구례 ○○, ○○○○ 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1	39,853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공사비에 포함된 품질관리활동비 85,551천원이 과다 계상되어 예산을 낭비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5.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⁴⁾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에게 제출해야 하며,

-
- 4)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고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발주청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건설안전 점검 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안전관리 계획의 검토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판정한 후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의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에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무선 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등의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19. 5월부터 2022. 5월까지 [별표] “안전관리계획 부적정 추진 명세”와 같이 9개 사업장에서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 통보만 하였고,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검토를 받지 못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태만이 하여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의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 ① 하수도 정비사업 시·도지사 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2개의 재해복구사업에서 과다 계상된 공사비 30,070천원과 품질관리비 85,551천원 등 총 115,621천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